

발 간 등 록 번 호

76-6480000-000183-10

당당한 경남시대

feel
GyeongNam

2013 계약심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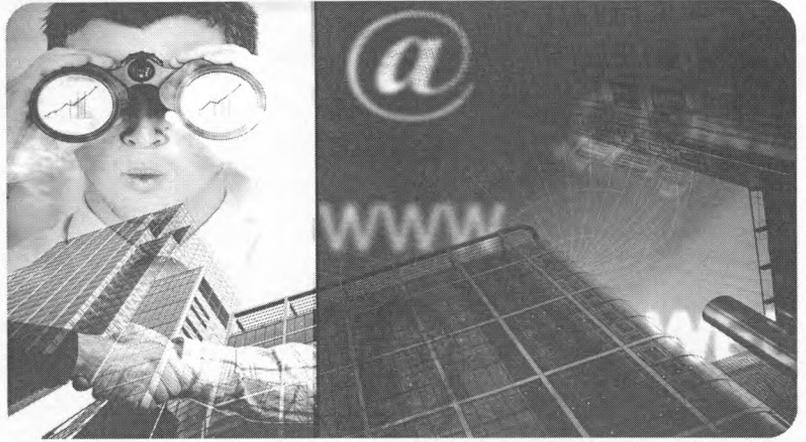


경상남도
GYEONGNAM

Contents

2013 계약심사 사례집

I. 계약심사 일반	1
1. 계약심사제도 개요	3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4
3. 계약심사 대상사업	5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7
5. 계약심사 처리실적	8
II. 주요 원가심사기준	11
1. 전석 쌓기(0.3m ² 급 전석)	13
2. 목재데크 설치(하부철물)	19
I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25
1. 토목공사	27
2. 건축공사	65
3. 전기공사	81
4. 기계·통신·소방공사	91
5. 건설기술용역	97
6. 일반용역	109
7. 물품구매 및 제조	121
8. 인 쇄	139
9. 시군 자체 계약심사	145
V. 부 록	189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91
2. 예정가격 작성요령	209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249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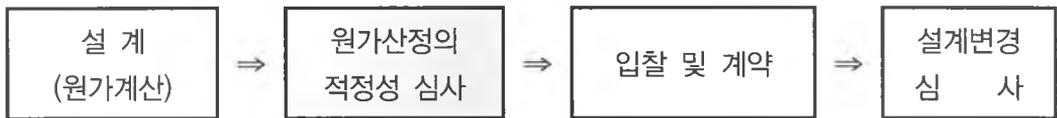
계약심사 일반

-
- 1. 계약심사제도 개요 3
 - 2. 계약심사부서의 역할 4
 - 3. 계약심사 대상사업 5
 -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7
 - 5. 계약심사 처리실적 8
-

1. 계약심사제도 개요

_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 절감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



_운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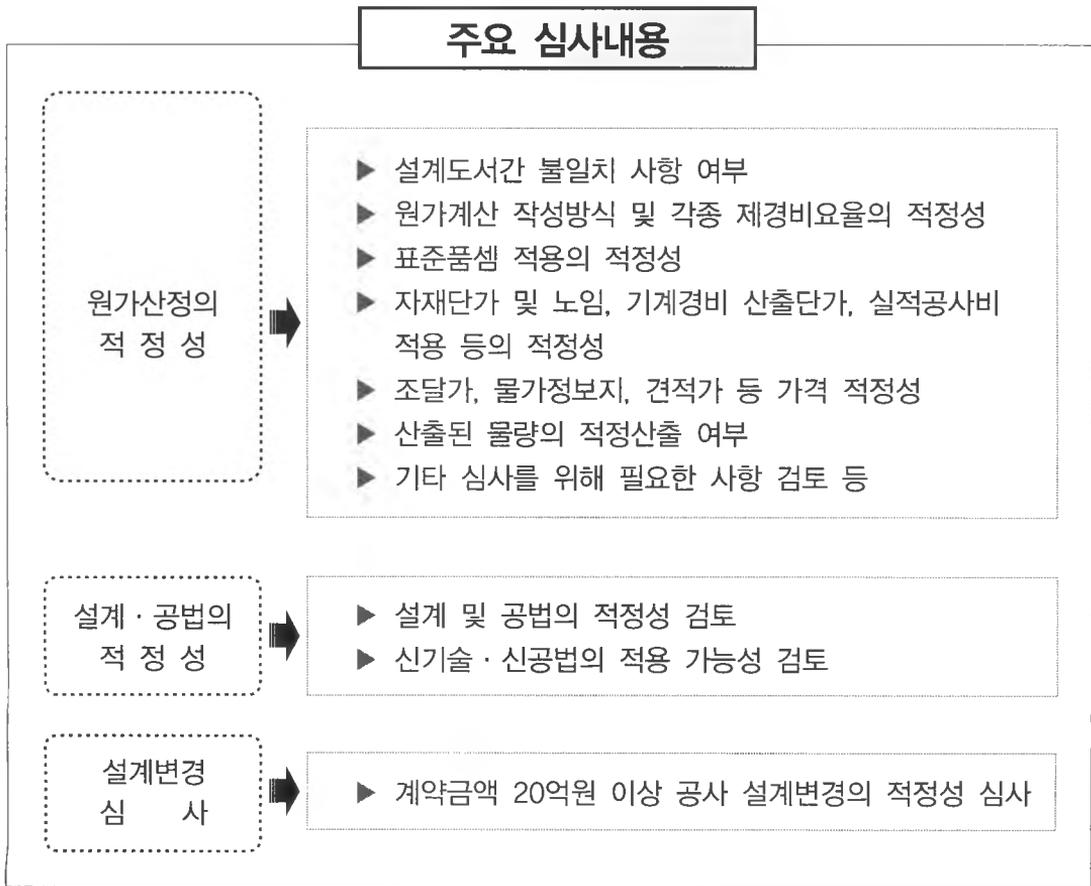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_추진경과

- 2008. 3 :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 마련(행안부)
- 2008. 5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 통보(행안부)
- 2008. 7 : "계약심사과" 직제신설
- 2008. 9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 2011. 1 : "계약기술심사과" 부서명칭 변경
- 2012. 1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감사관실 일상감사담당"신설
- 과폐지 2담당 신설(계약심사담당 : 시군, 일상감사담당 : 도본청)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의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원가계산 방식·제경비 요율·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심사
- 자재단가(조달·견적가·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심사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심사



3. 계약심사 대상사업

_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도〉 • 도 본청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 •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군〉 • 국도비 재배정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건설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학술 및 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구매·제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_심사제외 대상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예: 상품권, 예술품 등)
-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 계약부서(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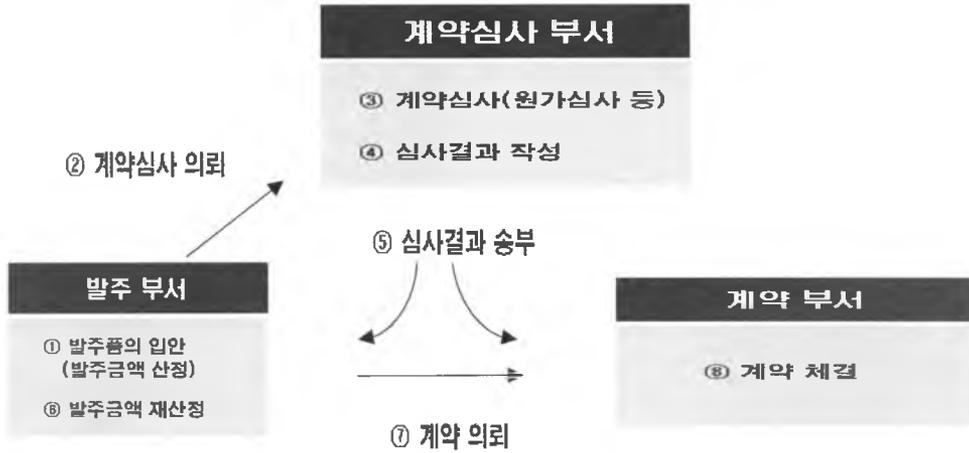
· 경상남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내역(2012.10.15~변경시까지)

연번	분야	사업명	제외사유
1	물품	정부단가고시 물품(조정)	정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후 고시로 심사 실익이 없음
2	물품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 구매	매 일마다 가격이 달라 거래실례가격 적용곤란(날씨 등 영향)
3	물품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 부품	기존 장비와의 호환문제, 헬기제조사에 서 독점 공급하여 대체품이 없음
4	물품	동·식물(화환 등 포함) 구매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동·식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5	용역	행사 용역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출연자,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6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	도로포장, 잔디구장 조성 등 관급자재 의 비중이 높아 심사 실익이 없음

※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_ 업무처리 흐름



_ 업무처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시·군 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 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사무관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건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사무관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 등 포함), 실적 DB 관리

5. 계약심사 처리 실적

총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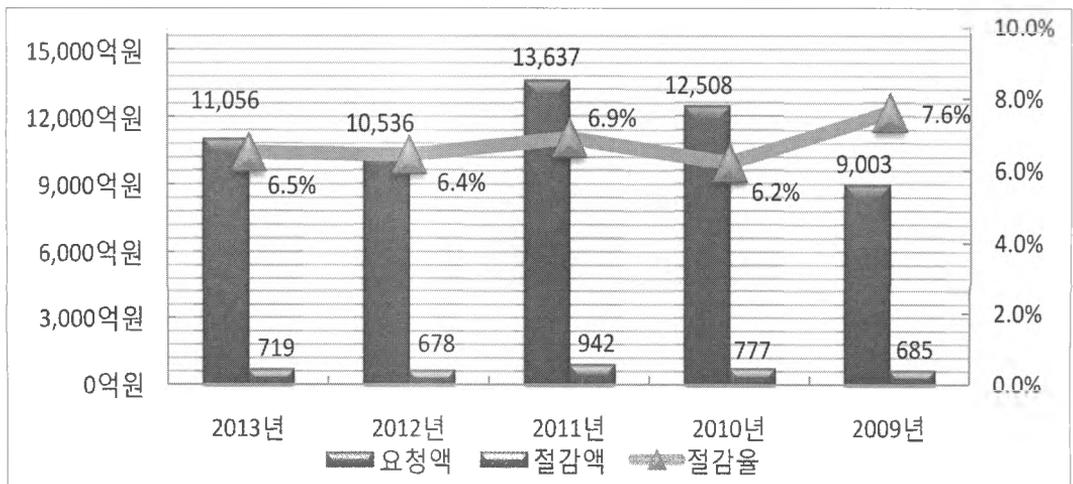
연도별	건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4,567	5,674,250	5,294,009	380,241	6.7%
2013	931	1,105,657	1,033,703	71,954	6.5%
2012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2011	1,068	1,363,703	1,269,521	94,182	6.9%
2010	879	1,250,870	1,173,114	77,756	6.2%
2009	628	900,346	831,819	68,527	7.6%

사업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계	2,398	342,719	7.0%	923	33,036	5.1%	1,246	4,486	5.4%
2013	521	66,238	7.0%	187	4,783	3.6%	223	933	3.5%
2012	504	61,293	6.8%	204	5,476	4.6%	353	1,053	4.0%
2011	571	87,795	7.2%	197	5,523	4.7%	300	864	4.8%
2010	521	68,136	6.2%	181	8,955	6.5%	177	665	7.2%
2009	281	59,257	7.9%	154	8,299	5.9%	193	971	7.5%

연도별 변동추이



2013년 심사실적

■ 사업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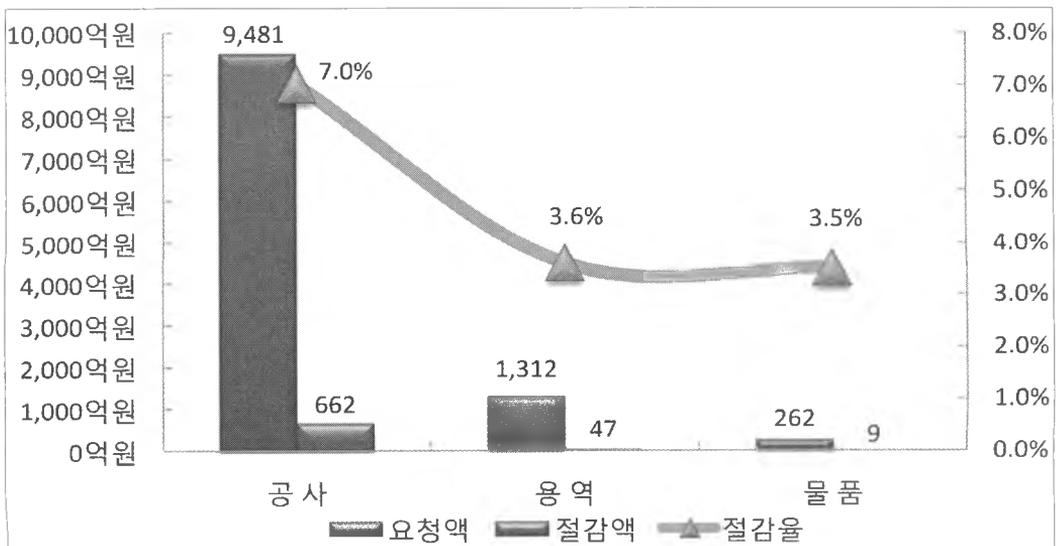
구분	건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비고
계	931	1,105,657	1,033,703	71,954	6.5%
공사	521	948,150	881,913	66,238	7.0%
용역	187	131,274	126,491	4,783	3.6%
물품	223	26,233	25,299	9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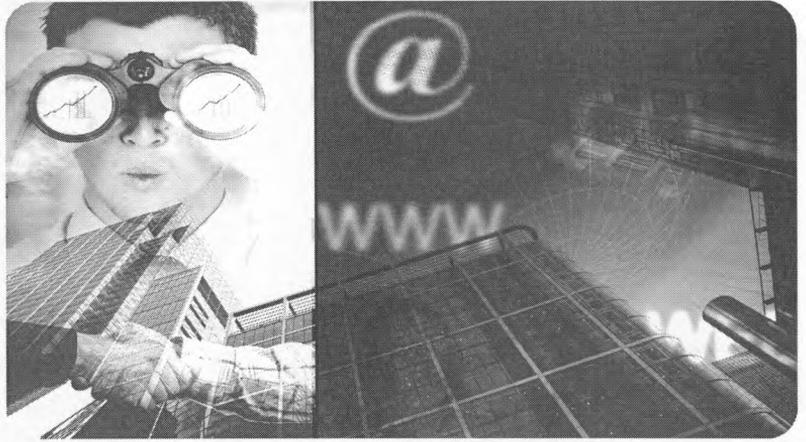
■ 발주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비고
계	931	1,105,657	1,033,703	71,954	6.5%
본청	88	128,558	119,898	8,660	6.7%
사업소	107	28,266	27,158	1,108	3.9%
출연기관	37	17,106	16,572	534	3.1%
시·군	699	931,727	870,075	61,652	6.6%

■ 사업별 변동추이





II

주요 원가심사기준

1. 전석 쌓기(0.3㎡급) 13

2. 목재데크 설치(하부철물) 19

전석 쌓기(0.3m³급) 설계 적용 개선(안)

※ 위 설계 적용 개선방안 사례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 쌓기(0.3m³급 전석) 설계적용 개선(안)

품셈에 0.5m³급의 전석 쌓기 품만 있고, 소하천 등에 많이 사용하는 0.3m³급의 전석 쌓기에 대한 적용 품이 없어 적절한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심사 시 적용코자 함

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1 관련기준

-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7장 돌쌓기 7-1-3 전석쌓기(0.5m³급)

(m²당)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인력	석공		인	0.14
장비	굴삭기	0.6m ³	시간	0.43

[주] ① 본 품은 0.5m³ 내외의 전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쌓는 품이다.

2 현 실태(시·군 심사요청)

- 소하천 등 호안으로 사용되는 0.3m³급 전석 쌓기에 대하여
 - 0.5m³급 전석 쌓기 품 적용 : 43,631원/m²
 - 부피비율(0.3m³÷0.5m³=60%) : 26,178원/m²
 - 심사 : 뒷길이 비율(0.67m÷0.79m=85%) : 37,115원/m²

※ 타 시·도 사례조사 : 품셈에 없는 것을 적용하므로 상호 대담 꺼려함.

II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1 현 설계의 문제점

- 0.3^{m³}급 전석 쌓기 품을 표준품셈의 0.5^{m³}급 전석 쌓기 품 적용 시 과다하며, 부피비율에 의한 품 적용은 과소계상 및 근거가 없음
⇒ 소하천 등 호안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0.3^{m³}급의 전석 쌓기 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2 현장의견

기 관	내 용
설계사	○ 품셈 상 돌쌓기처럼 뒷길이 비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시공사	○ 실시공 시 0.3 ^{m³} 급 전석과 0.5 ^{m³} 급 전석은 시공성(시공속도)에 차이가 있음 ○ 깎잡석처럼 규격에 따라 품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착안사항

-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7장 돌쌓기7-1-1(메쌓기), 7-1-2(찰쌓기)와 같이 뒷길이 (cm)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
※ 전석 뒷길이 : 0.3^{m³} 뒷길이 0.67m, 0.5^{m³} 뒷길이 0.79m

III

개선(적용)방안

1 검토내용

- 깎돌 및 야면석의 돌쌓기 등의 유사품과의 비교를 통하여 0.3^{m³}급 전석 쌓기 품에 대한 합리적인 단가 기준 마련
- 뒷길이 기준으로 품을 조정

② 설계 기준별 단가 비교(0.3m³급 전석 쌓기)

구분	과다계상 (0.5m³급 적용)	과소계상 (0.5m³급 기준으로 부피비율 계상)	개선방안 (뒷길이 적용)
인력	석 공 : 0.14인	석 공 : 0.084인	석 공 : 0.119인
장비	굴삭기 : 0.43인	굴삭기 : 0.258인	굴삭기 : 0.366인
문제점 및 개선안	0.3m³전석을 0.5m³ 전석쌓기품 적용 하여 설계 과다계상	단순 체적 비례적용으로 과소계상 ※ $0.3\text{m}^3/0.5\text{m}^3=0.60$ (60%적용)	- 0.3m³ 뒷길이:0.67m, - 0.5m³ 뒷길이:0.79m ⇒ $0.67/0.79 \approx 0.848$ (85%적용)
단가	43,631원/m² (100%)	26,178원/m² (60%)	37,115원/m² (85%)

③ 개선(적용)방안

- 돌쌓기 품은 면적으로 계상하나, 그 면적은 돌의 뒷길이를 기준함
- 전석 쌓기(0.3m³급)도 뒷길이를 적용 시 적절한 단가 산출
- 개선안

구분	명칭	단위	수량	비고
			0.3m³급	0.5m³급
인력	석공	인	0.119	0.14
장비	굴삭기(0.6m³)	시간	0.366	0.43

[주] ① 본 품은 0.3m³내외의 전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쌓는 품이다.

붙임 : 시공 사진 1부.

시 공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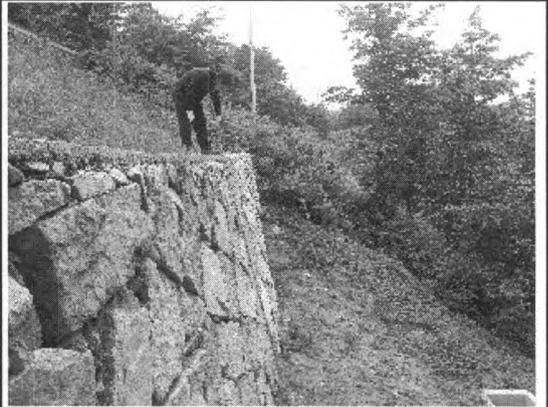
전석 쌓기



전석쌓기



전석 쌓기



전석 쌓기

목재데크 설치(하부철물) 설계 적용 개선(안)

※ 위 설계 적용 개선방안 사례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데크 설치(하부철물) 설계적용 개선(안)

목재데크 설치 시 하부철물에 대한 적용 품이 없어 적정한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심사 시 적용코자 함

I 관련기준 및 현 실태

① 관련기준

-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14장 금속공사 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중 제작설치 : 간단, 보통, 복잡

② 현 실태(시·군 심사요청)

- 잡철물 제작 설치의 제작설치 품 적용 : 4,077,525원/ton
- 견적단가 적용 : 230~250만원 정도
- 심사 : 건축부문 제7장 철골공사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중 비내력식 적용 ≒ 160만원 정도
※ 타 시·도 사례조사 : 품셈에 없는 것을 적용하므로 상호 대담 꺼려함.

II 현 설계의 문제점 및 착안사항

① 현 설계의 문제점

- 목재데크 하부철물 설치 품을 건축부문 잡철물 제작설치 품(간단) 적용 시 과다하며, 견적단가 적용은 과다견적 및 근거가 없음
⇒ 하부철물의 기능별 제작설치 품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적용 기준 마련 필요

② 현장의견

기관	내용
설계사	○ 목재데크의 철물에 대한 설치 품이 없어 잡철물 제작설치 단가를 적용 하였으나 다소 품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시공사	○ 하중을 받는 재료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음.

③ 착안사항

- 표준품셈 건축부문 제7장 철골공사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에서 하중지지 여부에 따라 부재를 내력식, 비내력식으로 구분하여 품을 적용

Ⅲ 개선(적용)방안

① 검토내용

- 데크 설치 시 하부철물의 철공 인부를 적용함에 있어,
 - 바닥보와 기둥은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이므로 내력식 적용
 - 장선은 합성목재를 설치하기 위한 부재이므로 비내력식 적용

② 설계 기준별 단가 비교

구 분		인 력	재 료	기 타	단가 (원/ton)
품셈 기준	건축14-6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철 공 27.65	용 접 봉 18.48kg 산 소 6,300ℓ 아세틸렌 2.8kg	용접기손로 (시간) : 20.83 전력소요량 (kW/h) : 126.0	4,077,525 (100%)
		보통인부 0.66			
개선 방안	건축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용 접 공 2.60			
		특별인부 0.74			
	내력식	철공 15.93			1,682,281 (41%)
	비내력식	철공 12.54			

※ 견적단가 : 230~250만원 정도

3 개선(적용)방안

- 인력품 : "건축부문 7-9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품 적용
- 재료 및 기타 품 : "건축부문 14-6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품 적용
- 개선안

(철물 ton당)

구분	목재데크 하부철물	
	내력식	비내력식
인력	철공 : 15.93(인)	철공 : 12.54(인)
재료	용 접 봉(kg) : 18.48 산 소(ℓ) : 6,300 아세틸렌(kg) : 2.8	
기타	용접기손료(시간) : 20.83 전력소요량(kW/h) : 126.0	
표준 단면도		
단가	2,112,546원/ton	1,682,281원/ton

[주] ① 본 품은 각관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②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개선(적용) 방안은 2014. 1. 1부터 품셈개정시까지만 적용함.

붙임 : 시공 사진 1부.

시공 사진



시공전



각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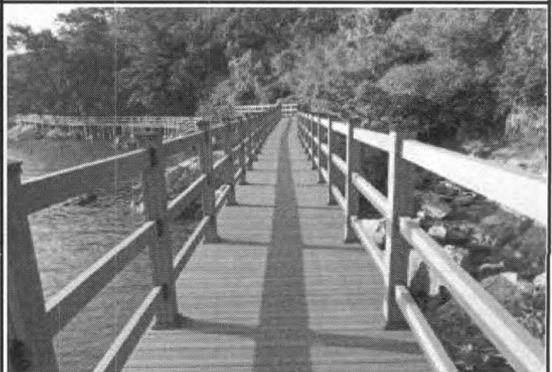
각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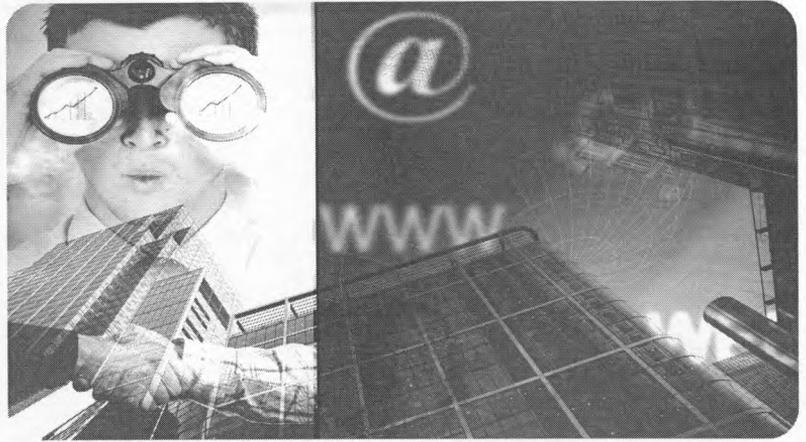
데크 설치



계단 완료



준공 사진



I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공사	27
2. 건축공사	65
3. 전기공사	81
4. 기계·통신·소방공사	91
5. 건설기술용역	97
6. 일반용역	109
7. 물품구매 및 제조	121
8. 인쇄	139
9. 시군 자체 계약심사	145

1. 토목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9
◆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31
◆ ○○소하천 정비사업	32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4
◆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6
◆ ○○방파제 연장공사	38
◆ ○○자전거 인프라 구축	39
◆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41
◆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3
◆ ○○공원조성사업	45
◆ ○○도로 확·포장공사	46
◆ ○○소하천 정비사업	48
◆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9
◆ ○○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51
◆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2
◆ ○○복합센터 부대시설공사	53
◆ ○○소하천 정비공사	55
◆ ○○서방파제 접안시설 및 연결교량 설치공사	57
◆ ○○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58
◆ ○○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59
◆ ○○도로 굴곡개량공사	60
◆ ○○천 수해복구공사	61
◆ ○○위험도로 개량공사	62
◆ ○○도유림 임도시범단지 조성사업	63
◆ ○○산림유역관리사업(1차)	64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97m, B=25.0m
- 사업비 : 6,345,869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4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345,869	5,669,112	676,757	10.7%

_주요 심사내용

- 교량공 00교 교대 날개벽을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면벽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표 준 단면도		

■ 오수관로 굴착 매설단면 하수도 시설기준에 맞게 재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표 준 단면도			오수관로

■ 상수관로 굴착 매설단면 상수도 시설기준에 맞게 재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표 준 단면도			상수관로

_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내 과다계상된 교량공 수량 및 관로공 시설기준에 맞게 굴착단면 재산정에 따른 시공단가 감액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로 L = 13,582m, 우수관로 L = 5,042m
- 사업비 : 14,281,9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281,900	12,194,500	2,087,400	14.6%

_주요 심사내용

- 추진가시설 추진갱 수량적용 : N = 23 → N = 15
- 임시야적 유통토 토량환산계수 조정
- $f = 1/1.24 \rightarrow f = 1/1.175$
- 내충격PVC 이형관 접합단가 조정
- 직관접합의 80% → 품셈 내충격 하수관 이음관조임단가 적용
- 조립식 간이 흙막이 설치단가 조정
- 박기계수 및 뽑기계수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1식
- 사업비 : 4,832,67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832,670	4,004,010	828,660	17.1%

_주요 심사내용

- 전석쌓기 규격 및 기초깊이, 천단콘크리트 등 수리검토를 통한 조정 및 재산정

구분	요청	심사
전석쌓기	<p>1,000 1,000 1:0.5 500 부직포 300 1:0.5 콘크리트두께 150mm T=30cm 전석쌓기(0.5㎡급)</p>	<p>870 700 1:0.5 300 부직포 200 1:0.5 콘크리트두께 150mm T=20cm 전석쌓기(0.3㎡급)</p>

- 교량 기초 암반부 터파기 계획고 재검토(구조검토)를 통한 조정 및 이에 따른 동바리 등의 수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교		

- 교량의 PSI 거더 제작 및 철골가공 및 조립품 조정
 - 연속교(복잡) → 단순교(보통)

기타 착안사항 등

- 전석쌓기 기초 및 교량 기초부의 근입 깊이를 구조계산 결과 보다 과다하게 설계 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공사 L = 424.0m, B = 17.0 ~ 30.0m
- 사업비 : 9,933,5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933,500	9,247,900	685,600	6.9%

주요 심사내용

- 구조계산 결과 재검토를 통한 가시설 어스앵커 길이 조정

구분	요청	심사
단면도		

■ 캔틸레버 옹벽 뒷굽길이 조정

구분	요 청	심 사
단 면 도		

■ 합성형라멘교 거더제작 및 가설 정모멘트부, 부모멘트부로 구분하여 조정

- 합성보 제작 품 → 정모멘트부(합성보제작품), 부모멘트부(철골제작품)

■ 그라우트용 시멘트 Bulk시멘트로 조정

- 그라우트용 시멘트 단위 사용량이 많으므로 포장품에서 Bulk로 변경 및 수량집계 오류 수정

기타 착안사항 등

- 가시설 어스앵커가 및 캔틸레버 옹벽 뒷굽길이가 구조계산 결과보다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상수관 매설 L = 17,258m²
- 사업비 : 8,498,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498,000	8,088,000	410,000	4.8%

주요 심사내용

- 하천횡단구간 공법 재검토(시공시기 조정) : 시트파일 → open cut

구분	요청	심사
하천횡단구간		

■ 굴착단면 모래부설부 재검토

구 분	요 청	심 사
굴착단면 모래부설		
	<p>· 모래 : 10,476m³</p>	<p>· 모래 : 8,361m³</p>

■ D-LINE 관재질 재료 재검토

- 닥타일 주철관 → 폴리에틸렌관

■ 교통신호수 재산정

- 100m마다 1일 → 50m마다 1일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내 실제 시공과정 및 필요자재 파악에 따른 단가 결정

○○방파제 연장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파제 제체석투하 수상 431 m³, 수중 9,224 m³
- 사업비 : 88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80,000	808,800	71,200	8.1%

_주요 심사내용

- 수중공사의 잠수조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선원인건비 및 잠수선 기계경비 계상 → 육상작업이 가능하므로 선원 및 잠수선 제외(육상인건비만 계상)
- 피복석 투하의 수중공사 잠수조 등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잠수조의 잠수선손료 적용 → 잠수조의 잠수선손료 삭제
- 자재운반, 중기운반 및 해상운반 적용거리 조정
 - 중기운반(해상운반) 운반거리 100%적용 → 운반거리 80%적용
(사석, 피복석 해상운반 거리 산출방법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확인에 따른 적용 품셈 및 공정 조정

○○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 L = 2.8km, B = 4.0 ~ 4.5m
- 사업비 : 1,036,1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36,100	940,400	95,700	9.2%

주요 심사내용

- 사토(토사, 잡석) 운반거리(인접 공사장) 조정 20km ⇒ 5km
- 보도부 도막형 바닥재 경계석 구간 및 재료 할증 제외

구분	요청	심사
도막형 바닥재		
	○ 도로 적용 - 할증 : 2% - 수량 : 4,139m ² (B=1.5m)	○ 도로 적용 - 할증 : 삭제 - 수량 : 3,296m ² (B=1.25m)

■ 골재파쇄(기존잡석) 공종 현장 및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골재파쇄 (잡석)	○ 적재(굴삭기) - 터파기적용 - 2,193원/m ³	○ 적재(굴삭기) - 흙깎기적용 - 0 원/m ³
	○ 운반 - q=29.37m ³ - 306원/m ³	○ 운반 - q1=0.7m ³ - 1,807원/m ³
	○ 파쇄 - 크러셔 - 25mm : 45ton/hr - 5,951원/m ³	○ 파쇄 - 크러셔 - 40mm : 57ton/hr - 4,700원/m ³
	○ 들어내기 - 로우더 1.72m ³ - 3,920원/m ³	○ 들어내기 - 로우더 2.87m ³ - 2,725원/m ³
	○ 성토재적재 및 운반 - 적재(굴삭기) - 2,582원/m ³ - 운반 1,895원/m ³	○ 성토재적재 및 운반 - 적재(들어내기 적용) - 0 원/m ³ - 운반 1,457원/m ³
	합계 : 16,847m ³	합계 : 10,689m ³

기타 착안사항 등

- 인근 순성토 공사장이 있는데도 사토(토사, 잡석) 운반거리를 임의 과다 계상 (20km) 하여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됨
- 보도부 도막형바닥재 차선도색 구간에 반영되어 있어 시공 불필요 구간 제외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L=798m
- 사업비 : 2,958,37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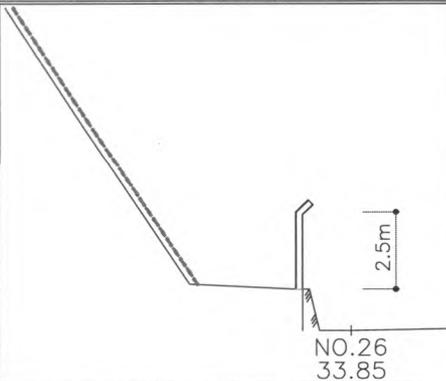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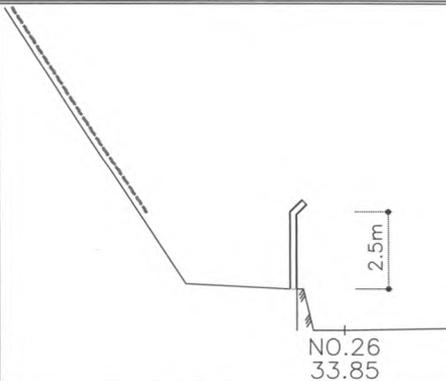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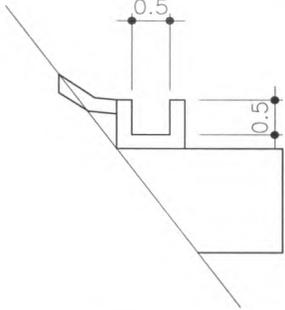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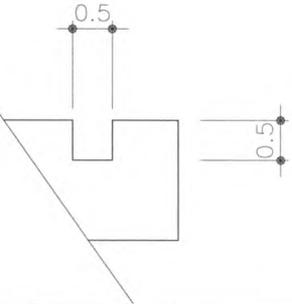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58,370	2,638,250	320,120	10.8%

_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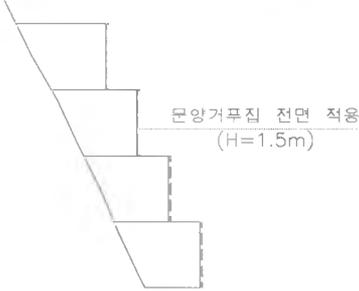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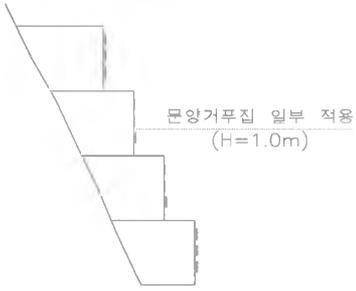
- L2형 측구 수량오기로 인해 조정 114m ⇒ 45m
-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책이 중복되는 구간 제외
- 낙석방지책 전량 구입 계획 하였으나, 기존 낙석방지책 재활용 가능 및 시공물량 변경으로 구입물량 조정

구분	요청	심사
낙석 방지망		
	○ 낙석방지망 1,462m ²	○ 낙석방지망 1,074m ²

- 산마루측구를 계단식옹벽 상단에 별도로 계획하였으나, 현장에 맞게 계단식옹벽 상단과 연계 설치

구 분	요 청	심 사
산마루 측구		

- 계단식 옹벽 문양거푸집 현장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계단식 옹벽 문양 거푸집	○ 문양거푸집 H=1.2m 	○ 문양거푸집 H=1.0m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역 정비 L = 1,112m
- 사업비 : 3,334,5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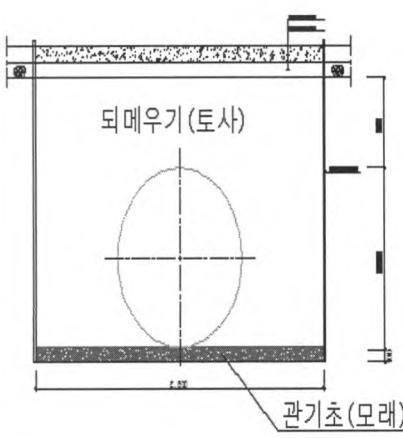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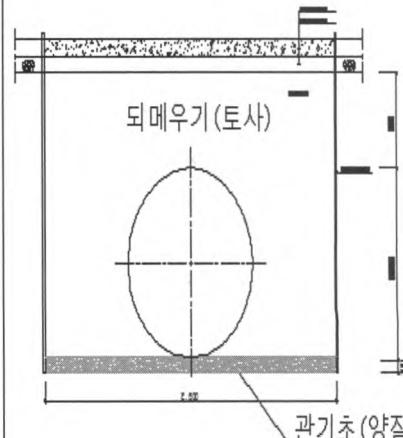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34,500	3,027,000	307,500	9.2%

주요 심사내용

- 우수분관 관기초 현장에 맞게 양질의 토사로 조정

구분	요청	심사
우수분관 관기초	 <p style="text-align: center;">관기초(모래)</p>	 <p style="text-align: center;">관기초(양질토)</p>
	○ 관기초 : 모래부설	○ 관기초 : 양질토

■ 우수맨홀 설치개수 수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우수맨홀 설치개수조정	24개 맨홀설치 간격 : 46m	15개 맨홀설치 간격 : 75m

※ 우수맨홀설치 간격조정근거(하수도시설기준 2011,환경부)

- 맨홀형상별용도 : 3호맨홀 내경1,500mm 원형 : 내경1,200mm이하의 관거 중간지점 적용
- 맨홀배치 : 관거 직경 1,000mm초과~1,500mm이하에서 150m 간격으로 설치를 표준.
- 현장여건 및 관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배치 간격 75m로 조정

기타 착안사항 등

- 우수맨홀설치 간격조정근거(하수도시설기준)하여 설치간격 조정으로 예산절감

○○ 공원조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비 : 1,857,91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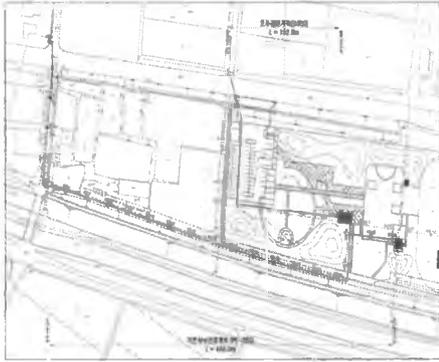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34,500	3,027,000	307,500	9.2%

주요 심사내용

- 당초 오수 및 상수관로 노선 분리하였으나, 현장에 맞게 노선 조정

구분	요청	심사
오수 및 상수	 <p>○ 오수 및 상수 분리</p>	 <p>○ 오수 및 상수 노선통일</p>

기타 착안사항 등

- 오수 및 상수관로가 국도 및 농로로 분리 계획되었으나, 현장에 맞게 동일 노선에 시공계획하여 예산절감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L = 265.0m, B = 35.0m(6차로)
- 사업비 : 916,88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34,500	3,027,000	307,500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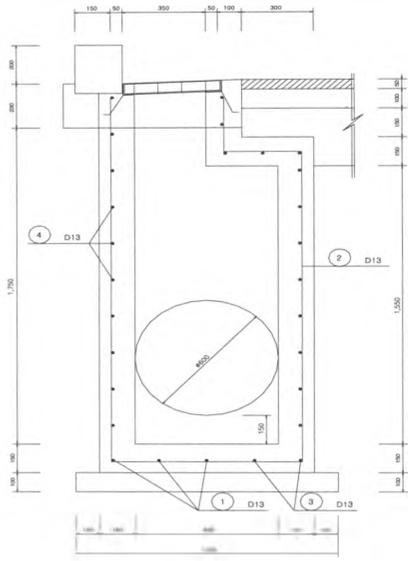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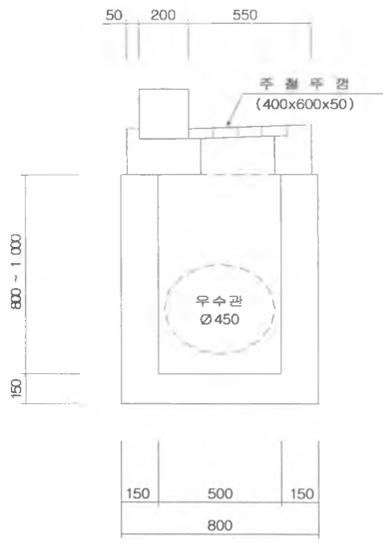
주요 심사내용

- 수리계산 및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본선부 우수관 관경 조정 : $\Phi 600 \rightarrow \Phi 450$

구분	요청	심사
우수관	<p style="text-align: center;">우수관 : $\Phi 600$</p>	<p style="text-align: center;">우수관 : $\Phi 450$</p>

※ 수리계산에 의한 종배수관 최소관경은 $\Phi 300\text{mm}$ 로 충분하나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종배수관 최소규격이 $\Phi 450\text{mm}$ 로 우수관 $\Phi 600\text{mm}$ 를 $\Phi 450\text{mm}$ 로 조정

■ 본선부 우수관경 조정에 따른 우수받이 규격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p>우수받이</p>	 <p>우수받이 : 400x600x2000</p>	 <p>우수받이 : 500x500x1000</p>

기타 착안사항 등

- 상수관로 관보호공 상수도시설기준에 맞게 조정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맞게 종배수관 규격 조정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되도록 방안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석쌓기 2,101m³, 라멘교 및 박스교 설치 2개소
- 사업비 : 1,030,461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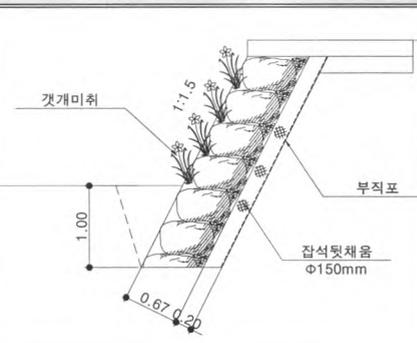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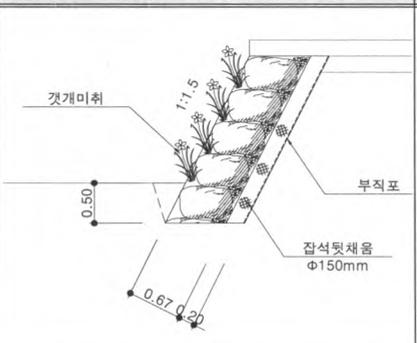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34,500	3,027,000	307,500	9.2%

_주요 심사내용

- 수리검토를 통한 전석쌓기 설치단면 수정(기초설치 1.0m⇒ 0.5m)

구분	요청	심사	비고
표준 단면도			전석 설치 단면

_기타 착안사항 등

- 전석쌓기 근입 깊이를 안정해석 없이 임의 적용은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Q = 9,000m³, 배수박스 개선 L = 80.0m
- 사업비 : 2,286,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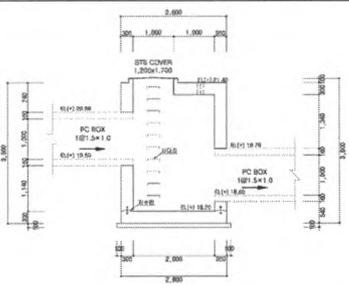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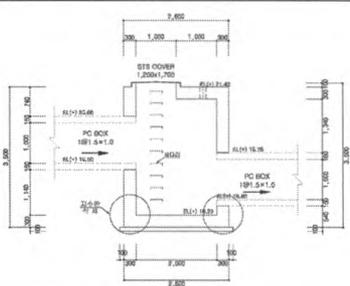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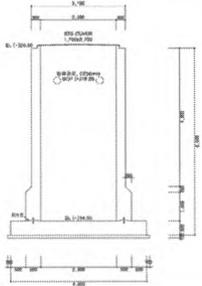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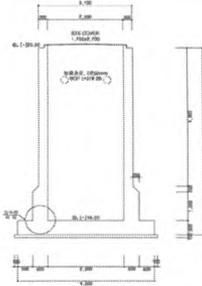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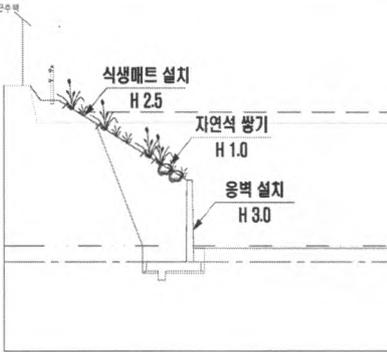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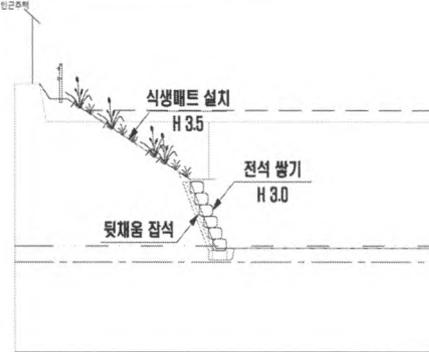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86,000	2,019,200	266,800	11.67%

주요 심사내용

- 수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물의 PVC지수판 삭제

구분	요청	심사
유입 수문실		
유출 펌프실		

- 제방 차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현장 타설에 의한 공기를 고려하여 역T형 옹벽을 전석 쌓기로 변경.
- 역T형 옹벽이 전석 쌓기로 변경되면서 옹벽 상부의 조경석설치 대신 사면 보호를 위해 식생매트 설치.

구 분	요 청	심 사
역T형 옹벽 → 전석 쌓기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연 친화적 시공방법과 자재물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조정

○○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외벽도색 A = 8,046m², 보도포장 A = 1,703m²
- 사업비 : 914,2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14,200	858,000	56,200	6.15%

주요 심사내용

- 유성 페인트칠 붓칠(2회)을 롤러칠(2회) 적용으로, 비계 상부 H=2.0m 제외 적용

구분	요청
비계설치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p>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내 실제 시공과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강토 옹벽 L = 216m, A = 835.5m²
- 사업비 : 1,189,809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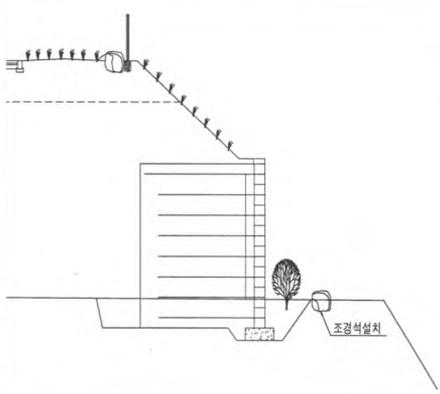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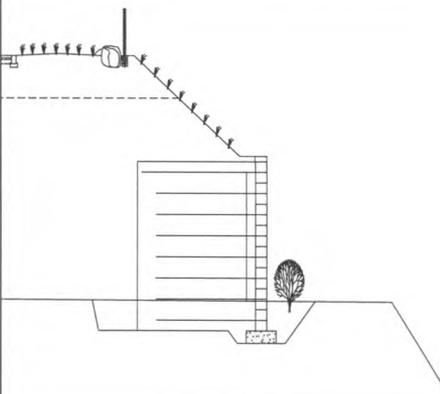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89,809	1,107,838	81,971	6.89%

_주요 심사내용

- 조경석쌓기 불필요구간 삭제

구 분	요 청	심 사
표 준 단면도		

_기타 착안사항 등

- 단지내 수목식재에 따라 경계가 구분됨에 따라 조경석까지 시공하는 것은 과다 설계하는 등 시공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됨

○○ 콤플렉스센터 부대시설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센터 부대시설공사 1식(보강토옹벽 373㎡, 상수관 1,803m)
- 사업비 : 94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40,000	846,000	94,000	10.0%

_주요 심사내용

- 구역내 보강토 옹벽 및 전석구간 터파기시 관로 터파기와 병행, 콘크리트 절단 한쪽면만 적용

구분	요청	심사
배수관로		

- 관정 개발 위치가 바다에 인접해 있으므로 대구경 지하수개발 굴착깊이 재산정

구 분	요 청	심 사
깊 이	H=49.0m	H=10.0m
배수관로	<p> B : 3.6m 펌프장벤울 (1.2x1.2x2.0) 스테인레스강관 (10200, L=49.0m) 노대층 2m 자갈층 4.9m 풍화암 2m 물관(Ø450, L=17.0m) </p>	<p> B : 3.6m 펌프장벤울 (1.2x1.2x2.0) 스테인레스강관 (10200, L=10.0m) 자갈층 10m </p>

- 도서해안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막재형에서 통풍성이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 변경(막구조파고라 → 셸터형파고라)

구 분	요 청	심 사
상세도		

_기타 착안사항 등

- 터파기 중복 및 관정 개발 위치 등 현장 여건 확인 후 적정단가를 적용

○○ 소하천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석교(아치교) 3개소, 식생블럭 7,630EA
- 사업비 : 2,221,400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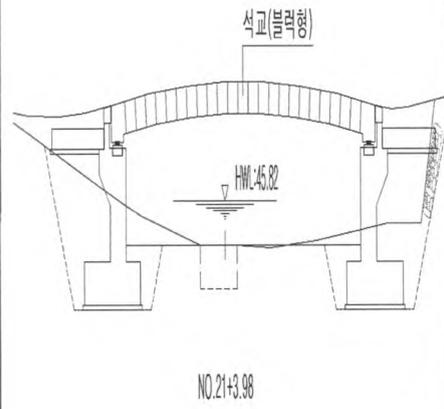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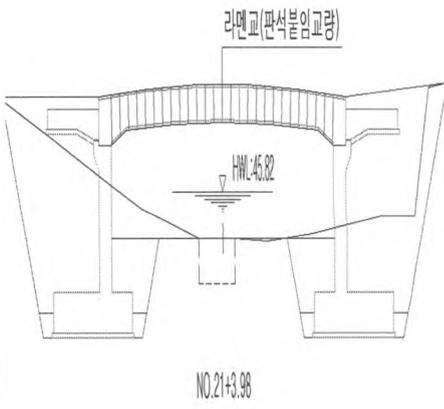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21,400	1,386,300	835,100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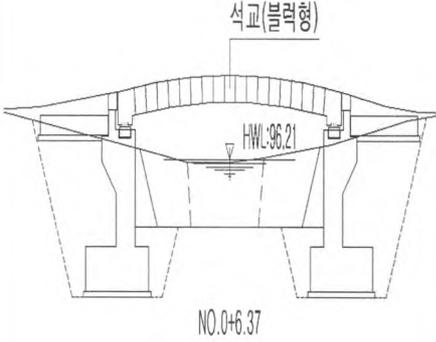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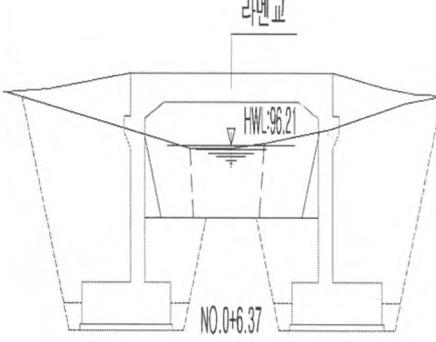
_주요 심사내용

- 국도변과 가시권에 있는 교량 2개소는 블록형 석교와 유사한 형상으로 경제적이며,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라멘교형식의 판석붙임 교량으로 변경

구분	요청	심사
교량단면	 <p style="text-align: center;">석교(블럭형)</p> <p style="text-align: center;">H.W.L. 45.82</p> <p style="text-align: center;">NO.21+3.98</p>	 <p style="text-align: center;">라멘교(판석붙임교량)</p> <p style="text-align: center;">H.W.L. 45.82</p> <p style="text-align: center;">NO.21+3.98</p>

- 교통량이 적은 1개소는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라멘교형식의 교량으로 변경

※ 블록형 석교 → 라멘교

구 분	요 청	심 사
교량단면	 <p style="text-align: center;">석교(블록형)</p> <p style="text-align: center;">HWL:96.21</p> <p style="text-align: center;">NO.0+6.37</p>	 <p style="text-align: center;">라멘교</p> <p style="text-align: center;">HWL:96.21</p> <p style="text-align: center;">NO.0+6.37</p>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합리적인 교량 공법 선정

○○ 서방파제 접안시설 및 연결교량 설치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접안시설 L = 150m, 연결교량 L = 44m
- 사업비 : 4,907,4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907,430	4,702,000	205,430	4.19%

_주요 심사내용

- T.T.P 제작, 거치 단가 조정
- 등부표 제작, 설치, 철거 단가 조정
- 사석투하는 내해에서 작업하므로 작업효율(E) 수정
- 운반비 우류대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재료비 감액
- 블록운반 및 거치비 단가 조정
- 철근가공조립의 기구손료는 가공품의 2%반영
- 아치교 고주파밴딩 단가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T.T.P와 해상블럭의 제작, 운반, 거치 시 까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투입 되는 공종을 항만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적용함.

○○항 다목적부두 건설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안벽공 L = 201m
- 사업비 : 13,16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160,000	11,261,743	1,898,257	14.42%

_주요 심사내용

- 사석 및 피복석투하 단가조정(토취장 상차도이므로 선별 및 적재비용 삭제)
- 사석운반 단가 조정(단위중량 2.6 → 2.0으로 변경)
- 육상운반 단가 조정(15ton → 24ton 덤프)
- 재하블록 거치, 적하 단가 조성(육상작업으로 잠수부 삭제)
- 재하블록 이적 단가 불필요공종으로 삭제
- 재하블록 적하 수량 조정(198 → 4)
- 현장가설 사무실 설치 단가 손율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항만공사의 공사 추진 상황별 불필요 공종 및 과도한 품 적용 부분 일괄 조정

○○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낙석 산사태 정비 L = 300m
- 사업비 : 1,009,3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09,300	908,600	100,700	9.98%

_주요 심사내용

- 토공의 작업부분에 대한 작업효율 및 토량환산계수 투입장비 변경 등으로 인한 단가 조정
- 암파쇄방호시설 불필요 구간 삭제
- 낙석방지책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수량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반영여부 검토

○○도로 굴곡개량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굴곡개량 L = 227m
- 사업비 : 834,46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34,464	754,446	80,018	9.59%

_주요 심사내용

- 토공부분의 토량환산계수 및 작업효율 조정
- 흙운반시 연암 소할비 삭제 및 운반덤프 변경(15 → 24)
- 덤프적재장비 및 작업효율 조정
- 각종 토공 투입장비 변경으로 단가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골재 및 잡석 운반시 적재장비를 작업여건에 맞도록 조정하고, 토공작업에 대한 토량환산계수 및 작업효율 투입장비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반영하고, 운반시 덤프 24ton 적용여부 및 적재시간 10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천 수해복구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량설치 1개소 및 하천정비
- 사업비 : 3,847,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47,000	3,739,000	108,000	2.8 %

_주요 심사내용

- 환율 및 경유 적용기준 단가 조정
- 강연선 조립설치 노무비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및 적용기준 조정(곡선 → 직선)
- 토공부 토사 적재시간 10분초과분에 대하여 재료비 중 유류대 삭제 반영
- 토사천공 할증계수 조정
- 강관파일두부보강 단가 조정
- 차선도색 융착식에서 상온식으로 변경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표준품셈 따른 적용여부 일괄 검토

○○ 위험도로 개량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위험도로 개량공사 L = 322m
- 사업비 : 1,120,5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20,520	1,094,130	26,390	2.4%

_주요 심사내용

- 유용도자운반 및 유용덤프운반 작업효율 변경(0.48 → 0.6)
- 터파기 및 되메우기 단가 조정(인력 10% + 기계 90% → 기계 100% + 보조인부 1인)
- 기초천공 단가조정(장비능력 토 사 : 0.49HR → 0.21HR,
리핑암 : 0.82HR → 0.34HR,
발파암 : 0.53HR → 0.43HR)
- 암파쇄 방호시설 불필요구간 삭제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표준품셈을 고려하여 검토

○○ 도유림 임도시범단지 조성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설연장 1.2km
- 사업비 : 420,1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20,190	379,370	40,820	9.71%

_주요 심사내용

- 토공에 반영된 보조인부 품 수정 및 보통인부 적용품 조정
- 철근가공조립의 기구손료는 철근가공노무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단가 조정
- 전석 채집 상차의 작업효율(E) 0.35 → 0.6으로 조정
- 기초단가(휘발유, 경유) 조정
- 보조기층 포설에 반영된 보조인부품 삭제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표준품셈을 고려하여 검토

○○ 산림유역관리사업(1차)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림유역관리사업(사방사업, 임도구조개량)
- 사업비 : 1,136,04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36,049	1,025,314	110,735	9.8%

_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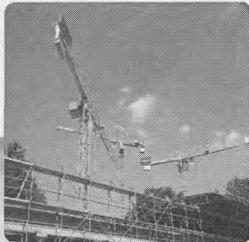
- 토공에 반영된 작업효율, 토량환산계수, 작업계수 등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
- 철근가공조립의 기구손료는 철근가공노무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단가 조정
- 야면석 채집 상처에 반영된 할석공 인부 삭제
- 기초단가(휘발유, 경유) 조정
- 불필요한 쉼터 삭제 및 포장공에 과다계상된 재료비 삭제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표준품셈을 고려하여 검토

2. 건축공사

◆ ○○학습관 건립사업	67
◆ ○○체험장 건립공사	68
◆ ○○체험관 건립공사	69
◆ ○○보건지소 신축공사	70
◆ ○○도서관 조성공사	71
◆ ○○문화재 정비공사	72
◆ ○○가옥 정비사업	73
◆ ○○소방서 신축공사	74
◆ ○○입체영상관 건립공사	75
◆ ○○유적지 수루 개축공사	76
◆ ○○센터 건립 유리온실 신축공사	77
◆ ○○연구시설 신축공사	78
◆ ○○대형 육상건립공사	79



○○ 학습관 건립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관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01.25m²)
- 사업비 : 2,648,79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48,794	2,515,211	133,583	5.04%

_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기타경비 요율 조정(6.4% → 5.7%)
 - 미 반영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0.07%)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조사가격 적용(18건)
- 일위대가 조정
 - 벽돌쌓기(0.5B, 1.0B) 등 3개 공종을 건축표준품셈에 맞추어 조정
- 2층 전시공간 실내마감공사 제외
 - 차후 발주계획인 전시시설설치와 연계하여 실내마감을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시 연출 및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예방
- 온실부분 건축물 현장정리 물량조정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냉·난방공사 배관 및 전선관 과다 계상된 물량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차후 공사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노력 필요

○○체험장 건립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험관 1동(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22.10m²)
- 사업비 : 2,901,28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01,285	2,664,153	237,132	8.17%

_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미 반영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0.07%)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및 시중가격 적용(20건)
- 일위대가 조정
 - 현장여건에 맞도록 장비규격 조정(펌프카 52m→36m)
 - 전통목구조 공중(목부재치목, 기와잇기 등)을 개정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으로 조정
- 건축물 현장정리는 건축물 구조에 맞도록 조정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목조)
- 터파기, 되메우기 공중 토량환산계수 조정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칙 변경에 따른 단열재 규격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체험관 건립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험관 1동(지상 1층, 연면적 243.36㎡)
- 사업비 : 1,342,51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42,516	1,224,634	117,882	8.78%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및 시중가격 적용(5건)
- 일위대가 조정
 - 2013년 개정된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7개 공종)
 - 기와이기(팔작) 및 보토다짐 공종 문화재 표준품셈으로 조정
 - 2013년 개정된 기계설비표준품셈 적용(12개 공종)
- 냉·난방공사 배관 및 전선관 과다 계상된 물량 조정
- 덤웨이트 설치를 도급에서 관급으로 조정
- 공사와 관련 없는 공종 제외
 - 주방용품 설치는 물품구매로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단순 물품구매 설치가 공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보건지소 신축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건지소 1동(지상 2층, 연면적 390.66㎡)
- 사업비 : 566,951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6,951	538,283	28,668	5.06%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및 시중가격 적용(25건)
- 일위대가 조정
 -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설치 시 현장여건 감안 레미콘타설 제외
 - 벽돌쌓기(0.5B, 1.0B)인력품을 2013년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
- 목재난간 설치부분에 오일스테인 도장이 반영되어 있어 바니시칠은 제외
- 드라이비트면 모르타르바름은 시공 불필요로 제외
- 현장여건상 순성토가 필요한 공사로 잔토처리 물량은 제외
- 알루미늄 금속창호는 관급자재로 변경
- 위생배관공사 중 스텐배관(4종)은 경제적 시공을 위하여 두께조정
- 콘크리트보양, 버림콘크리트 타설 등 물량산정 오류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등 가격적정성 검토

○○도서관 조성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서관 1동(지상 2층, 연면적 1,056.00㎡)
- 사업비 : 1,310,8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10,870	1,075,293	235,577	17.97%

_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환경보전비 요율 조정(0.5% → 0.3%)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및 시중가격 적용(30건)
- 일위대가 조정
 - H형강부재를 사용하므로 설계에 반영된 Built up제작 공수를 Rolled shape 제작 철골공수로 조정
 - 벽돌쌓기(0.5B, 1.0B)등 34개 공종에 대하여 2013년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
- 사용고재 공제 누락분 반영
- 알루미늄쉬트패널 수량산출 오류부분 조정
- 냉·난방공사 배관 및 전선관 과다 계상된 물량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문화재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이전건립 1동(지상 1층, 연면적 79.81㎡)
- 사업비 : 431,18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31,182	397,698	33,484	7.76%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및 시중가격 적용(9건)
- 일위대가 조정
 - 기와해체공종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 기둥치목(원기둥) 개정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 한식목공 (7.12인 → 6.51인), 한식목공조공 (4.27인 → 3.91인)
 - 보통인부 (3.56인 → 3.26인)
- 문화재 수리보고서 작성인원을 실제 작성인원으로 조정
 - 17인 → 12인

_기타 착안사항 등

-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실제 투입되는 인원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 가옥 정비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복원(지상1층 5개동, 연면적합계 217.79m²)
- 사업비 : 825,5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25,570	668,524	157,046	19.02%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간접노무비 요율 조정(8.9% → 8.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공사금액 5억미만 → 5억 ~ 50억미만)
- 자재단가 조정
 - 문화재청 설계승인 조건사항 반영(더글라스 → 육송)
- 일위대가 조정
 - EGI 웬스설치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문화재청 설계승인 조건사항 반영
 - 기단공사 삭제 및 강돌 100% 재사용
 - 창호원형 유지에 따른 물량 재조정
 - 화장실공사 제외

기타 착안사항 등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면밀히 검토
- 문화재공사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조건사항 반영여부 검토

○○ 소방서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방서 2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986.20㎡)
- 사업비 : 4,677,0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677,040	4,434,733	242,307	5.18%

주요 심사내용

- 강관비계매기 수량산출 기존 물량을 재 산정하여 변경(9,723㎡ → 2,957㎡)
- 콘크리트파일 천공 물량을 지질조사서에 의거 불필요하여 삭제
- 벽돌쌓기 일위대가를 변경된 2013년 품셈으로 변경 적용
- 위생기구 설치 및 급수급탕 배관공사 품을 일위대가에 맞게 조정
- 스탠드설치 품을 철근가공조립 보통에서 간단으로 조정
- 수리계산 재검토후 U형 측구 수량 변경
 - U형측구 183m(400×400mm) → 80m(400×400mm)와 103m (200×200mm)으로 구분 적용
- 전기공사의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조정(2.48%→1.24%)
- 엘리베이트를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입체영상관 건립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영상관 건립 1동(지상 2층, 연면적 790.36㎡)
- 사 업 비 : 1,410,58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10,580	1,369,810	40,770	2.89%

_주요 심사내용

- 데크플레이트 적용에 따라 조립식강관 동바리 물량 제외
- 강관틀 비계매기를 이동식 강관말비계로 변경 적용
- 콘크리트 보양이 콘크리트 타설품에 포함되어 있어 물량 제외
- 건축물보양이 바닥면 보양으로 하드롱지에서 톱밥으로 변경 적용
- 냉난방 공사 및 공기순환 장치설치공사의 전선 및 전선관 설치는 컨트롤 방법 변경에 따라 물량 재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도 및 내역서의 면밀한 검토로 적정 물량 산출

○○ 유적지 수루 개축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루 1동(지상 1층, 연면적 48.60m²)
- 사업비 : 320,26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20,263	306,131	14,132	4.41%

_주요 심사내용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설치 시 크레인 사용시간을 2시간 → 1시간으로 조정 적용
- 이동식강관 말비계 설치기간을 공기를 감안하여 6개월 → 3개월로 하고 높이도 2단 → 1단으로 변경
- 석재가공(정다듬) 노무비품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으로 변경 적용
- 단청공사의 면담기를 수리 품에서 신축 품으로 변경
- 공사원가 중 간접노무비를 2013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9.5%→8.9%)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

○○센터 건립 유리온실 신축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리온실 1동(지상 1층, 연면적 1,344m²)
- 사 업 비 : 9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00,000	803,006	96,994	10.78%

_주요 심사내용

- 건축물현장정리 인력품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로 변경 적용
- 철골공사 잡재료비 10%를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적용기준의 최대치인 5%로 변경 적용
- 철골공사 중 경량형강철골조립 설치를 현장여건에 맞게 철골가공조립과 철골 세우기 품으로 변경하여 적용
- U형 측구 물량을 139m → 111m로 도면에 의거 재 산정
- 공사원가 중 간접노무비를 2013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9.5%→8.9%)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 연구시설 신축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구동 1동(지상 1층, 연면적 654.67㎡)
- 사업비 : 747,1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47,140	722,531	24,609	3.29%

_주요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합판거푸집 사용횟수를 3회 → 5회로 변경 적용
- 타일압착붙이기 일위대가를 변경된 일위대가 적용
- 내벽 및 천정수성페인트 로울러칠를 뽀칠로 변경
- 옥상바닥보 옆면의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추가(424㎡ → 476㎡)
- 온실바닥 몰탈 물량이 도면과 불일치하여 도면에 맞게 물량제외
- 기계설비의 잡재료비(재료비의 3%) 삭제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 대형 육상건립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구시설 1동(지상 2층, 연면적 269.94㎡)
- 사업비 : 773,731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73,731	751,038	22,693	2.93%

_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환경보전비 적용을 주택에서 주택외 건축으로 변경 적용(0.3%→ 0.5%)
- 철골도장(방청2회, 철부 2회)을 붓칠에서 뿔칠로 변경 적용
- 철골공사를 위한 트럭크레인 사용일수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4일→2일)
- 스테인레스스틸문이 내역서에 현장 설치도로 되어 있어 문 설치 노무비를 삭제
- 수성페인트 로울러 칠을 뿔칠로 변경 적용
- 호이스트설치에 따른 중복 계상된 설치시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삭제
- 토공기준틀 설치 일위대가 인력품 및 되메우기 단가산출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공사 표준품셈 적용 및 현장여건, 불필요한 공정 등 면밀히 검토

3. 전기공사

- ◆ ○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83
- ◆ ○ ○ 체험장 건립공사 84
- ◆ ○ ○ 에코롯지 조성사업 85
- ◆ ○ ○ 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
- ◆ ○ ○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87
- ◆ ○ ○ 운영시설물 확충사업 8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500 kw) : 1식
- 사 업 비 : 2,302,33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02,336	2,163,609	138,727	6.02%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태양광 구조물 외 6종 조달청 가격정보 및 재건적 적용
- 접지공사 설치품 및 구조물 할증을 착오 적용분 조정
 - 접지공사(전품 5-10 → 전품 3-38), 할증율(10% → 5%)
- 전선관(ELP) 동시 포설품 미적용분 조정
 - 1열 포설 → 3열 포설품(86%) 적용 : 전품 4-31
- '13년 개정품셈 미 적용분 조정 적용
 - 전선관(ELP,30mm) 개정품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인력품 산정시 적정품셈 적용 및 자재단가, 사양의 적정 여부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 체험장 건립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설비 공사 : 1식
 - 인입, 전력, 동력, 전열, 전등, 태양광설비 등
- 사업비 : 462,11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62,114	422,847	39,297	8.50%

주요 심사내용

- 수배전반, 조명기구 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3자 단가의 동일 품목중 저가 및 도내업체 생산분 적용
- 부하에 비해 과다 산정된 변압기 용량 조정
 - 변압기 용량 (300KVA → 250KVA)
- 전기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예비라인 삭제 조정
 - 동일 변전소에서 인입되는 예비라인은 설치 불필요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에코롯지 조성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공사 1식
 - 옥외전력간선, 객실관리,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등
- 사업비 : 619,29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19,296	567,019	52,277	8.44%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수배전반 외 3종 견적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전기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예비라인 삭제 조정
 - 동일 변전소에서 인입되는 예비라인은 설치 불필요
- 터파기 및 되메우기 기계, 인력 조합 조정
 - 기계 80% + 인력 20% → 기계 100%
- 옥내전선관 및 등기구 설치 인력품(내선전공) 조정
 - 반복공정으로 비교적 쉬운공사는 90% → 전품 5-1, 5-25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기공사 등 : 1식
 - 인입, 동력간선, 전등, 전열, 정보통신, 감시제어, 계측제어
- 사업비 : 531,57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31,579	475,023	56,556	10.63%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수배전반 외 2종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부하에 비해 과다 산정된 변압기 및 발전기 용량 조정
 - 변압기(600kva → 500kva), 비상발전기(600kw → 550kw)
- 전기인입 전선관 및 케이블 예비라인 삭제 조정
 - 동일 변전소에서 인입되는 예비라인은 설치 불필요
- 옥외 전선 및 전선관 할증율 조정 : 10% → 5%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간접노무비12.7% → 9.9%)
 - 「조달청 2013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6.19.)」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케이블설치 11,356m, 전선관 6,456m, 지중등 외 조명등기구 519EA, 제어반 6면, 기타 1식
- 사업비 : 금577,175천원
- 사업기간 : 2013. 5월 ~ 8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77,175	568,577	8,598	1.49%

주요 심사내용

내역서 조정

구분	검토 항목	심사결과 조정내용	비고
원가 계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류 재검토 - 일반건설 → 특수및기타(전기공사)	○ 2013년 원가계산 제비율기준적용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분류 및 요율 재검토	○ 2013년 원가계산 제비율기준적용	
일위대가	○ 잡자재비, 전선관 부속품비 전체 삭제	○ 일위대가 부분에서 삭제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터파기 조정 - 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 기계 100%로 변경	
	○ 되메우기 조정 - 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 인력 1인	○ 기계 100% + 인력 1인으로 변경	
도면	○ 팔각정 상부 조명 설치여부	○ 도면에서 설치 가능한 위치로 수정	
단가	○ POLE 견적적용 단가 재조정	○ 견적부분 단가 수정함	
기타	○ 굴삭기 등 수정보완	○ 터파기 부분 검토 및 수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 3호, 2013. 4. 1)에 의거 인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매하여야 함
-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현장설치 여건 등 본 공사와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추진 권고
 - 지중매립등 설치의 적정성(누수문제)
 - 다양한 종류의 데크로드 경관조명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자재수급 적정성
- 관급자재는 적정한 시기에 구입을 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관급 자재가 파손 또는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운영시설물 확충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임시 일체형수. 배전반(300,500,950KVA) 4면,
임시 가설분전반 30면
- 사업비 : 금 395,365천원
- 사업기간 : 2013. 6월 ~ 8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5,365	376,840	18,525	4.69%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조정

공종	규격	단위	당초	조정	비고
터파기	보통토사.BH(0.7)	M3	2,653	794	터파기인력품제외
되메우기	보통토사.BH(0.7)	M3	7,328	790	터파기인력품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30 \emptyset	인	0.007	0.006	전기4-31(신설품) 배전전공
		인	0.014	0.018	전기4-31(신설품) 보통인부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30 \emptyset	M	3,497	2,884	배관부속자재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40 \emptyset	M	3,729	3,645	배관부속자재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50 \emptyset	M	3,870	3,768	배관부속자재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65 \emptyset	M	4,948	4,808	배관부속자재제외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조 정	비 고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80Ø	M	5,386	5,190	배관부속자재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100Ø	M	8,003	7,708	배관부속자재제외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	ELP125Ø	M	10,881	10,461	배관부속자재제외
핸드홀	700*700*700	EA	921,506	870,950	터파기인력품제외
전기용맨홀	1000*1000*1000	EA	1,011,419	936,305	터파기인력품제외
접지공사	제3종	식	244,886	183,227	터파기인력품제외
접지공사	제2종	식	244,886	183,227	터파기인력품제외
접지공사	제1종	식	244,886	183,227	터파기인력품제외

■ 단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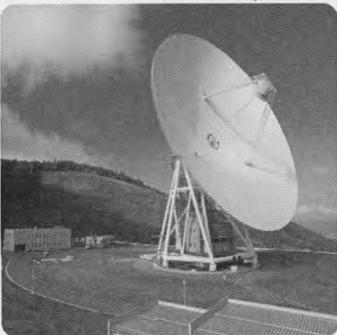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비 고
일체형수배전반	300KVA	면	7,740,000	7,140,000	개별운반-통합운반
일체형수배전반	500KVA	"	9,870,000	9,270,000	개별운반-통합운반
일체형수배전반	950KVA	"	13,470,000	12,870,000	개별운반-통합운반

■ 원가계산 효율조정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비 고
간접노무비	직노*10.4		10,164,734	9,225,11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료+직노)* 1.24%*1.2		7,971,181	3,059,598	
임시배전반 및 분전반			1,171,655	53,042.641	재료비-기계 경비로전환

4. 기계 · 통신 · 소방공사

- ◆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93
- ◆ ○○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94
- ◆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5
-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96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0톤/일
- 사업비 : 1,270,95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70,950	1,189,730	81,220	6.39%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고액분리기 외 18종 재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공사재료의 할증률 적용기준에 따라 조정 (기계품 1-9)
 - 형강(H·L·C), 평철, 파이프 할증률 : 10 → 5%
- 스테인리스 강관배관 옥외설치 할증율 적용
 - 옥외 배관은 10% 감한다
- 과다 설계된 스테인리스 강관배관 자재 스케줄 조정
 - sch20 → sch10 (경제적 시공)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분뇨처리시설(기계공사) 개량공사 1식
- 사업비 : 481,7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81,700	434,200	47,500	9.86%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탈수기 외 47종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 공법기자재는 재견적 후 가격조정
- 개정품셈 미적용 공종 조정
 - 스테인리스 강관 및 경질관 설치공종 '13년 개정품셈 적용
- 사급자재로 설계된 케익호퍼 외 주요 기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관급자재로 반영
- 과다 설계된 신축관 스케줄 조정
 - sch20 → sch10 (경제적 시공)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존 설치사업(기계, 건축, 토목) 1식
- 사업비 : 3,402,7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402,720	2,940,590	462,130	13.58%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오존발생장치 외 26종 견적, 가격정보,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 공법기자재는 재건축 후 가격조정
- 과다 설계된 스테인리스 강관배관 자재 스케줄 조정
 - sch20 → sch10 (경제적 시공)
- 배관 설치시 착오 적용된 직경 변경 (품셈 1-1-1 플랜트배관 [주]13)
 - 플랜트 용접공, 플랜트 배관공 → 용접공, 배관공
- 안전관리비 착오 산정분 조정 적용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는 계상 제외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신공사 1식 (건축면적 : 1,916m²,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비 : 307,01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7,013	268,616	38,397	12.50%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CCTV 설비공사 외 2종 재 견적후 단가조정
- 스피커(벽부형, 10W) 설치품(통신설비공) 착오분 조정
 - 노출은 60% 적용
- 안전관리비 착오 산정분 조정 적용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는 계상 제외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5. 건설기술용역

- ◆ ○○급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9
- ◆ ○○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00
- ◆ ○○연결보도교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1
- ◆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102
- ◆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외 2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 103
- ◆ ○○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104
- ◆ ○○항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105
- ◆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106
- ◆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107
-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8



○○급수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급수관로 L = 103.9km
- 사업비 : 1,308,4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08,400	1,116,800	191,600	14.6%

주요 심사내용

- 조사측량 품셈내 보통인부의 제경비, 기술료 산정제외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측량업무종사자에 보통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산정대상이 아님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정사업비 현장에 맞게 재산정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반영

기타 착안사항 등

- 추정사업비 과다 산정되어 재산정으로 원가 절감

○○ 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조성 29,850m²
- 사업비 : 252,98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2,980	234,840	18,140	7.1%

_주요 심사내용

- 지형측량 면적 공원조성 기본계획 면적 적용
 - 당초 33,573m² 조정 29,850m²
- 토질조사 시험수수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시험수수료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반영
- 조사측량 품셈내 보통인부의 제경비, 기술료 산정제외
 -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측량업무종사자에 보통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산정대상이 아님

_기타 착안사항 등

-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맞게 지형측량 면적 조정으로 원가 절감

○○연결보도교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결보도교 L = 720m
- 사업비 : 430,1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30,100	408,980	21,120	4.9%

_주요 심사내용

-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조정
 - 터널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터널이 없어 인원수 감소
- 토질조사 시험수수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시험수수료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누락되어 반영
- 경관설계 제경비 및 기술료 기본요율 적용
 - 당초 : 제경비 120%, 기술료 25% 변경 : 제경비 110%, 기술료 20%

_기타 착안사항 등

- 실시설계 공종에 맞는 인원수 적용 및 누락 반영하여 부실설계 방지
- 과다 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수량 반영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밀시험 및 CCTV조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밀시험 495개소, CCTV조사 14,394m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0,000	167,300	132,700	44%

_주요 심사내용

- 수밀시험(D250m/m) 과다계상으로 실 공사 수량 반영
 - 당초 75개소 조정 21개소
-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하였으나, 용역으로 제비율 제외
- 손해배상보험료 누락되어 반영

_기타 착안사항 등

- 수밀시험 과다계상으로 실 공사 수량 반영으로 원가 절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외 2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마을하수도 3개소
- 사업비 : 1,304,39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04,390	1,194,820	109,570	8.4%

_주요 심사내용

- 감리용역 제경비 및 기술료 기본요율 적용
 - 당초 : 제경비 115%, 기술료 30% 변경 : 제경비 110%, 기술료 20%
- 손해배상보험료 누락되어 반영

_기타 착안사항 등

- 손해배상보험료 누락 반영하여 부실설계 방지
- 과다 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수량 반영

○○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기본계획 수립(길이 10km), 개선사업 실시설계(4.45km)
- 사업비 : 785,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85,000	776,379	8,621	1.1%

_주요 심사내용

- 수자원개발품셈에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은 1/2,5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측척에 따른 계수값(s)을 0.65 → 0.54로 변경 적용
- 공공측량 심사비의 제경비 및 기술료가 중복되어 있어 감액
- 지적도 복사 및 측도 등 간단한 경비는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어 감액
- 하천기본계획수립 중 작업계획 수립의 소요인력을 하천공사 시행에서 하천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재 산정
-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을 항만공사에 준하여 적용(0.458%→0.476%)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항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파제 축조(L = 450m)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사업비 : 264,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4,000	239,866	24,134	9.14%

_주요 심사내용

- 측정분석비를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수수료로 변경 적용
- 인쇄비에서 물량 및 단가를 재 조정
- 손해배상공제요율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산정 추가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적용

○○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L = 12.77km, 유역면적 494.4km²)
- 사업비 : 612,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12,000	569,467	42,533	6.95%

_주요 심사내용

- 수자원개발품셈에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은 1/2,5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축척에 따른 계수값(s)을 0.65→0.54로 변경 적용
- 공공측량 심사비의 제경비 및 기술료가 중복되어 있어 감액
-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등 간단한 경비는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어 감액
- 유역면적에 따른 요율을 200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이 변경 수립하는 경우로 당초 유역면적의 2/3로 산정
- 손해배상공제 요율 적용을 항만공사에 준하여 적용(0.458% → 0.476%)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지반조사 표준품셈,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적용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 현황측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 사 업 비 : 2,8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800,000	2,774,000	26,000	0.93%

_주요 심사내용

- 지형현황측량의 작업량계수(ρ)를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20만 m^2 미만이므로 1.05 → 0.9로 변경 적용
- 자연시료 채취를 성토부에 대한 조사를 3회 → 2회로 조정하여 재 산정
- 현장배인시험을 성토부에 대한 시험으로 조정하여 재 산정(15회 → 10회)
- 일축 및 삼축압축은 성토 후 지반지지력 판단을 위한 검사이므로 절토부분 물량 삭제
- 손해배상공제료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재 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비 : 658,66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58,665	635,819	22,846	3.47%

_주요 심사내용

- 국외여비 중 숙박일수를 실 숙박일로 재 산정(6일→5일)
- 인쇄물 경비를 경인쇄기준요금 산정방식을 복사원가 견적가로 재 산정
- 회의진행비는 다과·음료제공 목적이므로 1인 20,000원→7,000원으로 조정
- 수질분석을 위한 출장자가 연구보조원이므로 식비를 25,000원 → 20,000원으로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공무원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적용

6. 일반용역

- ◆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용역 111
-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12
- ◆ ○○송수관로 매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13
- ◆ ○○ 임시시설물 설치용역 114
- ◆ ○○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15
- ◆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 116
- ◆ ○○엑스포 교통 및 주차관리 운영업무 대행용역 117
- ◆ ○○센터 경비·청소용역 118
- ◆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용역 119



○○ 고분군 긴급발굴조사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고분군 긴급발굴 조사 1식(유구현황 및 분묘발굴)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000	189,410	10,590	5.29%

_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 조정(시중가격 조사)
 - 수송비 및 현장사무실 설치비 조정
 - 전산장비임차료 및 보안시설운영비 조정
 - 항공촬영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 조정
- 장비(굴삭기)사용일수를 실제 투입일수로 조정
- 주재비 조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보고서 인쇄비등 직접경비 산정 시, 시중가격 면밀히 검토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직접경비 및 제경비 적정반영여부 검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중침적폐기물 작업선 인양 및 적재 : 60.4ha
 - 수중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인양 : 70.9ha
 - 수거폐기물 처리 : 26ton
- 사업비 : 230,08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0,080	193,945	36,135	15.7%

_주요 심사내용

- 수중침적폐기물 잠수사 탐색 및 인양공정 중 잠수사 인건비 조정
 - 현장측정 값을 적용한 잠수사 이동속도를 침적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8.5m/min ⇒ 10m/min)
- 순사업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조정

○○ 송수관로 매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폐자재 처리(폐아스콘) : 8,209.6ton
 - 폐자재 처리(폐콘크리트) : 1,092.3ton
 - 폐자재 운반 : 9,301.9ton
- 사업비 : 235,37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5,375	216,700	18,675	7.9%

_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 설계단가가 2012년 도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2013년도 단가로 조정
- 발주부서 설계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단가, 도 원가계산 결과를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가로 조정
 - 도 원가계산 시 사업예정지에서 ○○군 내 폐기물처리업체까지의 거리 적용
(※ 운반거리 25km ⇒ 20km로 조정)

○○ 임시시설물 설치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설(전시시설) : 2,200㎡
 - ○○○○○ 역사관 1,250㎡(25*50),
 - ○○○○관 450㎡(15*30), • ○○○○ 유산관 500㎡(20*25)
 - 가설(수익시설) : 푸드코트 300㎡(15*20)
- 사 업 비 : 436,3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3. 11. 20. 까지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36,300	411,510	24,790	5.7%

_주요 심사내용

- TFS 텐트의 품질에 따라 단가 차이가 커 최저가의 일괄 적용 보다는 견적가의 평균가격을 심사가로 적용

구 분	규 격	요청금액	심 사 가	조 정 액	
전시 시설	○○○○○역사관	25m×50m	191,245,917	181,176,250	10,069,667
	○○○○○관	15m×30m	70,357,550	65,527,550	4,830,000
	○○○○○유산관	20m×25m	77,661,833	74,090,167	3,571,666
	소계	2,200㎡	339,265,300	320,793,967	18,471,333
수익	푸드코트	15m×20m	57,378,450	53,313,783	4,064,667
계	2,500㎡	396,643,750	374,107,750	22,536,000	
부가가치세	10%	39,664,375	37,410,775	2,253,600	
조 정 액		-8,125	-8,525	400	
합 계		436,300,000	411,510,000	24,790,000	

○○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침적폐기물 인양 : 54.0ton(330ha)
 - 인양폐기물 해상운반 및 육상하역 : 54.0ton
 - 인양폐기물 위탁처리 : 54.0ton
- 사업비 : 208,888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8,888	198,170	10,718	5.1%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에 실제 투입 가능한 2개의 인양틀을 적용하고, 작업선 1회 작업소요 시간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요 청	심 사
○정화작업선 능력 - 예망속도 : 3.0knot(5,567m/hr) - 인양틀 규격 : 1.5m×1ea - 1시간 작업면적 : 0.84ha ○작업선 1회 작업소요시간 - 인양틀 투망(1ea) : 4.0분 - 인양틀 예망(1ea) : 34.0분 - 인양틀 양망(1ea) : 13.0분 - 작업선 이동(운반) : 3.0분 - 인양폐기물 대선이적 : 4.0분 - 작업지회항 및 투하준비 : 3.0분 - 계 : 61.0분	○정화작업선 능력 - 예망속도 : 2.0knot(3,704m/hr) - 인양틀 규격 : 1.5m×2ea - 1시간 작업면적 : 1.0ha ○작업선 1회 작업소요시간 - 인양틀 투망(1ea) : 5.0분 - 인양틀 예망(1ea) : 34.0분 - 인양틀 양망(1ea) : 15.0분 - 작업선 이동(운반) : 3.0분 - 인양폐기물 대선이적 : 8.0분 - 작업지회항 및 투하준비 : 3.0분 - 계 : 68.0분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유지관리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측정소 21개소, 측정장비 253대 유지관리
- 사업비 : 235,488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5,488	229,428	6,060	2.57%

_주요 심사내용

- 기존 설치된 장비중 KIMOTO장비는 2012년 11월에 구입하여 정도검사 주기가 2년(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이므로 금회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킴

_기타 착안사항 등

- 정도검사 주기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내역 검토

○○엑스포 교통 및 주차관리 운영업무 대행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청엑스포 교통 및 주차관리 운영업무 대행
- 사업비 : 675,29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75,290	631,927	43,363	6.42%

_주요 심사내용

- 교통운영요원 일비 산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도록 조정
- 교통운영요원은 산청관내에 상주하므로 숙박비 감액
- 전산처리비 사용기간에 맞도록 조정
- 주차관리원의 사전교육비 등 불필요내역 감액

_기타 착안사항 등

- 실제 행사운영에 필요한 내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

○○센터 경비·청소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센터 경비 및 청소
- 사업비 : 305,614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5,614	289,094	16,520	5.4%

_주요 심사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차수당 금액 감액 조정
- 전기기사 자격수당 지급 사항 금액 조정
- 퇴직충담금 금액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실제 청소 및 경비에 필요한 내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토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건설공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용역
- 사업비 : 492,37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92,370	453,880	38,490	7.8%

_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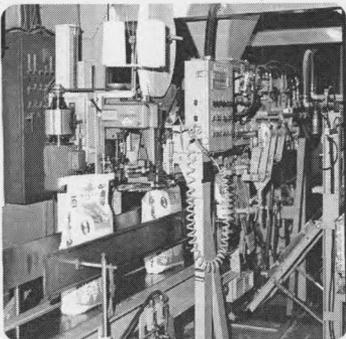
- 신방리 유물 산포지와 화양리 자라산 유물산포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의 지형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지 → 평지로 조정함에 따른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감액

_기타 착안사항 등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반영사항 검토

7. 물품구매 및 제조

- ◆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매 123
- ◆ 119 구조장비(응급의료) 구입 124
-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125
- ◆ ○○종합운동장 성화조형물 제작 126
- ◆ 주스 가공시설 제작 127
- ◆ 축산물검사장비(유해가스 배출장치) 구매 사업 128
- ◆ 가축방역장비 구매 129
- ◆ 정보시스템 접근관리 체계 강화시스템 구축사업 130
- ◆ 119구급헬기 탑재장비 구매 131
- ◆ 병원선 진료의약품 구매 사업 133
- ◆ 롤스크린 설치 134
- ◆ 가축검진·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소요물품 구매 135
- ◆ DB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136
- ◆ 속기기계 구매 137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매

_사업개요

- 사업내용
 -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DR) : 195,000,000원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49,000,000원
- 사 업 비 : 244,000천원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4,000	232,000	12,000	4.9%

_주요 심사내용

- DR : 195,000,000원
 - PACS : 49,000,000원
- } → 220,000,000원(△ 12,000,000원)

_기타 착안사항 등

- DR 및 PACS의 주요장비 규격만을 명시한 점을 감안하여 요청가와 조사된 견적가의 평균을 심사가로 적용
- DR과 PACS를 별도 가격으로 요청하였으나, DR과 PACS가 서로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DR, PACS를 1식으로 견적 조사하여 최저가 적용

119 구조장비(응급의료) 구입

_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호기말이산화탄소측정기 등 19종
- 요청금액 : 199,705천원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9,705	194,215	5,490	2.7%

_주요 심사내용

- 후두튜브세트(LTS 5EA) : 2,750천원 ⇒ 2,695천원(△ 55천원)
- 충전식흡인기(5EA) : 1,760천원 ⇒ 1,650천원(△ 110천원)
- 심전도감시장치(M30 5EA) : 4,950천원 ⇒ 4,510천원(△ 440천원)
- 구급차소독기(SPR-1 5EA) : 5,390천원 ⇒ 5,280천원(△ 110천원)
- 기초인명소생용가방(B104 5EA) : 275천원 ⇒ 231천원(△ 44천원)
- 전자체온계(IRT4520 5EA) : 99천원 ⇒ 88천원(△ 11천원)
- 검안라이트(3M 5EA) : 22천원 ⇒ 13천원(△ 9천원)
- 혈당측정기(퍼포마 5EA) : 154천원 ⇒ 115천원(△ 39천원)
- 분리형들 것(WSX-E5 5EA) : 1,320천원 ⇒ 1,040천원(△ 280천원)

_착안사항

- 도내 업체별 견적가를 조사한 결과 품목별 최저가 금액을 심사금액으로 적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구입

_사업개요

- 사업내용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동시방제약제 25,273봉
- 요청금액 : 111,201천원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1,201	106,146	5,054	4.5%

_주요 심사내용

- 도내 농약 대리점 및 도매점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가 금액 적용(2012년 심사금액 : 4,200원)
- 농약(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애멸구 동시방제약제)
: 4,400원 ⇒ 4,200원(△200원)

_착안사항

- 규격서(3가지 유효성분 중 택 1)에 적합한 농약제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장 단가가 낮은 "무사미" 가격으로 심사
 - 규격 농약제 : 뉴투톱(입), 뉴명콤비(입), 무사미(입)

○○ 종합운동장 성화조형물 제작

_사업개요

- 사업내용 : 종합운동장 성화조형물 제작 1식
- 요청금액 : 229,890천원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9,890	216,890	13,000	5.6%

_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비율 조정 : 9.5% ⇒ 5.0%
- 수량 및 단가조정 : 성화대용 화반제작 외 9종

구 분	수 량	단 가(천원)	비 고
성화대용 화반제작	0.1톤→0.08톤	407 → 325	
세라믹 화이버	4m ² →3m ²	1,160 → 870	
화반제작		9,000 → 8,200	
성화원형띠 조형물		20,500 → 18,800	
성화조형물(비행기)	1.57톤→1.28톤	6,389 → 5,209	
비행기제작 및 설치		32,000 → 29,190	
성화조형물(구)	0.9톤→0.43톤	3,663 → 1,750	
구 제작 및 설치		3,000 → 2,760	
원형조형물 제작		5,000 → 4,600	
메인 버너		9,500 → 9,300	

주스 가공시설 제작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플랜트 1식
- 사업비 : 129,008천원
- 사업기간 : 2013. 5월 ~ 6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9,008	113,740	15,268	11.8%

_주요 심사내용

-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의 사과주스 가공시설 도면 및 규격서와 동일한 견적서를 제출한 곳은 ○○식품기계 뿐임
 - ○○식품기계의 거래실례가격(타 업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심사요청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함
 - 사과주스 가공시설 도면에 제시된 장비이외 사과 가공공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감액적용(△15,268천원)
 - 만능분쇄기 : 8,360천원 → 0천원(△8,360천원)
 - 다용도 혼합형 야채절단기 : 3,740천원 → 0천원(△3,740천원)
 - 과일박피기 : 2,530천원 → 0천원(△2,530천원)
 - 과일분할기 : 638천원 → 0천원(△638천원)
- ⇒ 위 4개 장비는 사과가공 공정에 필요한 장비로 추후 필요여부에 따라 별도 구매할 것

축산물검사장비(유해가스 배출장치) 구매 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축산물 검사장비 7종
- 사 업 비 : 금33,990천원
- 사업기간 : 2013. 6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990	33,440	550	1.6%

_주요 심사내용

-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 중에 소비자에게 유해한 농약, 향생제, 호르몬, 식품첨가물 등의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황산, 염산, 포르말린, 페놀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극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밀폐된 실험실로부터 필터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장비
- 거래실례가격을 토대로 작성한 장비의 심사요청액은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액을 그대로 반영함.
 - Fume Hood : 4,840천원 → 4,840천원(△0)
 - 유해가스안전제거장치 : 6,600천원 → 6,600천원(△0)
 - 저온안전보관시약장 : 16,000천원 → 16,000천원(△0)
 - 안전보관시약장 : 6,000천원 → 6,000천원(△0)
- 단, 부속품은 장비 구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부속품 구입비는 삭감 : 550천원 → 0천원(△550)

가축방역장비 구매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축방역장비 2set(혈액분석기, 면역분석기)
- 사 업 비 : 금155,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6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품 명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155,000	143,200	11,800	7.6%
혈액분석기	95,000	87,200	7,800	8.2%
면역분석기	60,000	56,000	4,000	6.6%

_주요 심사내용

- 가축방역장비(혈액분석기, 면역분석기)는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의뢰된 혈액 시약에 대한 생화학 및 면역분석을 통해 환축에 대한 질병의 상태를 예측하고 농가에 치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임.
- 조달청 나라장터의 가격정보 적용하여 감액적용
 - 혈액분석기 : 95,000천원 → 87,200천원(△ 7,800천원)
 - ⇒ 조달청 입찰공고 20130422531(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 산청군) 유사 거래실례가격 참조
 - ※ 북부지소에서는 생화학 검사시 기본적으로 Chemistries, Enzyme 및 Electrolyte에 대하여 22항목외에 임상증상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 실시 예정임. 또한, 매년 한가지 이상의 연구과제를 테마로 하는 시험연구사업에 생화학 검사장비를 활용할 예정임
 - 면역분석기 : 60,000천원 → 56,000천원(△ 4,000천원)
 - ⇒ 조달청 입찰공고 20111202683-11(공고 제124호, 서울대농생대 그린바이오 자동면역분석기 입찰 구매) 유사 거래실례가격 참조

정보시스템 접근관리 체계 강화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정보시스템 접근기록 관리시스템 등 3종 16식
- 사업비 : 금 3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정보시스템 접근관리 체계 강화시스템 구축	계	360,000	334,600	25,400	7%
	① 접근제어관리시스템	150,000	150,000	0	0%
	② 접근제어정책서버	98,000	90,000	8,000	8.1%
	③ 웹셀탐지시스템	38,000	38,000	0	0%
	④ 웹셀에이전트	69,000	51,600	17,400	25%
	⑤ 시스템 연결용 통신장비	5,000	5,000	0	0%

주요 심사내용

- 정보시스템 접근관리 체계 강화시스템 구축건은 5개분야 시스템으로 구분
 - ① 접근제어 관리시스템, ③ 웹셀탐지시스템, ⑤ 시스템 연결용 통신장비는 거래실례 가격(타인 납품견적서)으로 적용하여 발주부서의 요구액대로 최저가 적용
 - ② 접근제어정책서버는 최근 KT(2012. 6.21)의 거래증빙 자료와 비교하여 감액조정
⇒ 98,000천원→90,000천원(△8,000천원, 300천원/유저*200유저*4식)
 - ④ 웹셀에이전트는 외환은행(2012.12.12)의 거래증빙 자료와 비교하여 감액 조정함
⇒ 69,000천원→51,600천원
(△17,400천원, Unix용 13,000천원*3식, NT/Linux용 6,300*2식)

119구급헬기 탑재장비 구매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3개품목 구매
- 사업비 : 금75,020천원
- 사업기간 : 2013. 4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75,020	54,200	20,820	27.7%
자동심실제세동기	37,380	22,000	15,380	41.1%
인공호흡기	35,000	30,000	5,000	14.3%
현장체증용카메라	2,640	2,200	440	16%

주요 심사내용

-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3건 심사요청액 조정 : 75,020천원→54,200천원(△20,820)
 - 자동심실제세동기 심사요청액 조정 : 37,380천원→22,000천원(△15,380)
 - ⇒ 거래실례 가격(타인견적)과 조달청 물품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11-165호) 가격참조(대당 18,000천원)중 최근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조정
 - 인공호흡기 심사요청액 조정 : 35,000천원→30,000천원(△5,000)
 - ⇒ 요구사항의 가슴기능 제외한 거래실례 가격(타인견적)을 적용하여 조정
 - 현장체증용카메라 심사요청액 조정 : 2,640천원→2,200천원(△440)
 - ⇒ 인터넷상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가 적용, 액세서리는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반영

기타 착안사항 등

■ 구급장비 관련 규정

- 구급장비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4호, 2013.2.25, 제정) 별표 3 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의료장비)에 따라 검토
 - ① 자동제세동기는 고급형과 기본형 중 1대만 탑재
 - ②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작사 항공인증을 득한 제품을 권장
- 의료기기법에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수입업자의 준수)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 검토
- 발주부서가 요청한 인공호흡기가 헬기 탑재시 예상되는 문제(기압변화, 전자파 발생)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진

병원선 진료의약품 구매 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비타민씨정 외 42종
- 사업비 : 금 42,090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2,090	40,987	1,103	2.62%

_주요 심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대상 : 요청액대로 심사
 - 대상품목 : 노바텍정 외 21종
 -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금액 적용
- 코프렐 외 7종 : 요청액대로 심사
 - ⇒ 도내 의약품 도매업체 3곳, 기 심사, 인터넷가, 요청액 비교
- 비타민씨정 외 12종 : 단가 조정
 - 주사기, 라텍스 글러브 : 22,200원 → 20,000원(△ 2,200원)
 - ⇒ 요청액, 기심사가(2013년), 업체 견적가 중 기심사가 적용
 - 비타민씨정 외 10종 : 287,680원 → 234,320원(△ 53,360원)
 - ⇒ 도내 의약품 도매업체 견적가(3곳), 인터넷 거래가, 기심사가의 평균가 적용

롤스크린 설치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롤스크린 설치
- 사업비 : 금 70,140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0,140	52,348	17,792	25.37%

_주요 심사내용

- 롤스크린 m²당 단가 감소정 : 61,419천원 → 52,348천원(△ 9,071천원)
 - 일반방염 롤스크린 : 22,000원 → 19,500원(△2,500원)
 - 암막방염 롤스크린 : 33,000원 → 23,300원(△9,700원)
 - 우드방염 롤스크린 : 99,000원 → 63,300원(△35,700원)
 - ⇒ 제조업체 4곳 견적가의 평균가격 적용
- 기타경비 삭감 : △ 8,721천원
 - 물품가격에 실측경비, 설치비(시공비) 등 제경비 포함

_기타 착안사항 등

- 규격서 상 타공율은 투과율(0, 1, 3, 5%)로 수정하기 바람
 - 예) 빛이 100% 차단되는 암막스크린은 투과율 0%로 표기
- 친환경인증서(Oeko-Tex Standard 100)를 받은 제품의 국내 생산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기준일 적용시점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시방서에 반영하기 바람
- 특정회사 브랜드명(예, 썬스크린, 비너스암막) 사용을 지양할 것

가축검진·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소요물품 구매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약류 76종, 초자류 112종
- 사업비 : 금112,439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시약류	52,559	51,662	897	1.71%
초자류	59,880	58,967	742	1.24%

_주요 심사내용

- 시약류 단가총액 감소정 : 15,803,260원 → 15,464,850원 (△338,410원)
 - 1Kb Plus DNA Ladder 외 51종 : 요청액대로 심사
⇒ 요청액, 기심사가(2013년), 3개업체 견적가 비교결과 요청액 적정
 - TAE Buffer(25X) 외 23종 : 단가 감소정
⇒ 기 심사가(2013년), 공급업체 3곳 조사가, 요청액 중 최저가 적용
- 초자류 단가총액 감소정 : 9,960,280원 → 9,908,570원 (△51,710원)
 - 도축검사용 샘플키트 외 90종 : 요청액대로 심사
⇒ 요청액, 기심사가(2013년), 업체 견적가 등 비교결과 요청액 적정
 - 삼각플라스크(2,000ml) 외 20종 : 단가 감소정
⇒ 기 심사가(2013년), 업체 견적가, 인터넷 및 물가자료 가격, 요청액 중 최저가 적용

DB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암호화 구축사업 1식
- 사업비 : 금11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0,000	101,000	9,000	8.18%

_주요 심사내용

- 암호화솔루션 : 30,000천원 → 27,000천원(△3,000천원)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체결 단가 적용
 - 요청물품은 케이사인이 개발한 K-Sign Secure DB(8core) 제품
- DB접근제어솔루션 : 35,000천원 → 29,000천원(△6,000천원)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체결 단가 적용
 - 요청물품은 모니터랩이 개발한 DB INSIGHT SG(1~8CPU) 제품
- GATEWAY APPLIANCE 외 1 : 45,000천원 → 45,000천원
 - 견적가와 요청액 비교결과 요청액이 적정

속기기계 구매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속기기계 5대 구매
- 사업비 : 금24,832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832	23,650	1,180	4.8%

_주요 심사내용

- 속기기계 단가 감소정 : 4,966천원 → 4,730천원(△236천원)
- 경기도의회(2012.3월) 예정금액(4,550천원), 인천시의회와 광양시의회 거래가 (각 4,730천원) 비교, 4,730천원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국내 속기기계 제조사는 (주)한국스테노와 (주)소리자바 2곳인데, 요청 물품은 (주)한국스테노가 독점 공급하는 제품임

8. 인 쇄

- ◆ ○○전통시장 문화관광 지도제작 141
- ◆ ○○ 관람안내 리플릿 제작 142
- ◆ 전시도록 제작 143
- ◆ 연간발간물 제작 144



○○ 전통시장 문화관광 지도제작

_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체그림지도(현지답사, 자료조사, 스케치, 컬러링 등)
 - 기획 및 디자인, 편집
 - 자료수집, 인터뷰 및 문안작성, 번역(영어, 일어, 중국어) 및 감수·교정
 - 사진촬영
 - 인쇄, 특수제본, 납품
 - 부수 : 80,000부(국/영 60,000부, 중/일 20,000부)
- 사 업 비 : 40,000천원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000	38,280	1,720	4.3%

_주요 심사내용

- 조판 및 편집비 : 1,179,672원 ⇒ 0원(△ 1,179,672원)
- 일 반 관 리 비 : 3,034,698원 ⇒ 2,916,731원(△ 117,967원)
- 이 윤 : 2,997,976원 ⇒ 2,764,401원(△ 233,575원)
- 부 가 가 치 세 : 3,637,966원 ⇒ 3,480,000원(△ 157,966원)
- 조 정 액 : △ 1,670원 ⇒ △ 48,444원(△ 30,820원)

_기타 착안사항 등

- 관광지도 디자인 시 조판과 편집을 함께 하므로, 디자인비용에 조판, 편집비가 반영되어 있음⇒ 조판 및 편집비 삭감
- 제작비용 삭감에 따른 제비율 감소

○○ 관람안내 리플릿 제작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550,000부(한글용 500,000부, 외국어용 50,000부)
- 사 업 비 : 금99,857천원
- 사업기간 : 2013. 6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9,857	93,491	6,366	6.4%

_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계약법 예규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심사함
- "학술용역 원가계산"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율을 적용함.
 - 일반관리비 비율조정 : 8% → 5%
 - 이윤 비율조정 : 15% → 10%
-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액중 "제본료"의 표기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반영함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액 총액은 변경사항 없음)
 - 제본료 금액 수정 : 18,000천원 → 12,500천원(표기 오류)
- 외국어 인쇄비 산출시 "용지대" 금액 포함하여 이윤 계산하여 심사요청액 과다 산정되어 조정함

전시도록 제작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600부
- 사업비 : 금23,038천원
- 사업기간 : 2013년 3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038	22,228	810	3.1%

_주요 심사내용

- 용지수요량 계산착오 용지가격 조정 : 3,095천원 → 2,382천원(△713)
 - ○○ 전시도록 용지대 : 2,092천원 → 1,479천원(△613)
 - □□ 전시도록 용지대 : 1,003천원 → 903천원(△100)
 - ※ 용지가격 거래실례가격 적용
- 용지대 조정에 따른 관리비 및 이윤 조정 : △97천원
 - ○○ 전시도록 : △83천원
 - □□ 전시도록 : △14천원
 - ※ 용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발주부서 요청액을 그대로 적용

연간발간물 제작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3종 660부
- 사업비 : 금50,761천원
- 사업기간 : 2013. 2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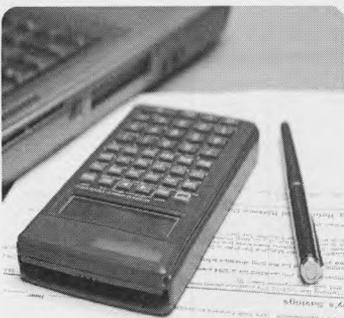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0,761	49,812	948	1.8%

_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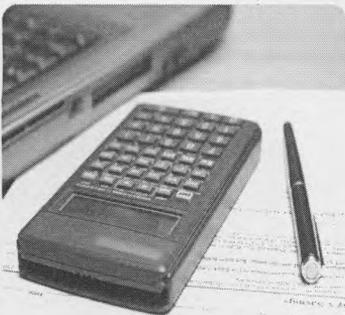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산출된 읍셋인쇄비는 발주부서에서 감하여 심사 요청하였기에 발주부서의 요청액대로 심사함
 - 경제동향 : 28,008,000원 → 28,008,000원(△0원)
 - 정책브리프 : 8,889,300원 → 8,844,900원(△44,400원)
 - ※ 용지대 및 필름 출력비 항목 계산 착오
- 디지털인쇄는 견적서와 비교 감액조정 : 3,863,840원 → 12,960,000원
(△903,840원)

9. 시군자체 계약심사

- ◆ 창원시 ○○공원 조성사업 147
- ◆ 창원시 ○○정수장 활성탄 여과재 재생 및 교체공사 148
- ◆ 진주시 ○○산업단지조성환경평가 용역 149
- ◆ 통영시 ○○마을 환경정비공사 150
- ◆ 통영시 ○○펌프장 펌프보수 공사 151
- ◆ 사천시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153
- ◆ 사천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154
- ◆ 사천시 ○○공원 정비사업 155
- ◆ 김해시 ○○삼각지구 저지대침수방지사업 157
- ◆ 밀양시 방법용 CCTV 제조구매설치사업 158
- ◆ 밀양시 ○○도로 확·포장공사 159
- ◆ 거제시 ○○공원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160
- ◆ 거제시 ○○휴양림 체육시설공사 162
- ◆ 양산시 ○○정수장 송수관로 설치사업 163
- ◆ 양산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65
- ◆ 의령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67
- ◆ 의령군 ○○천 정비사업 168



◆ 창녕군 ○○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169
◆ 창녕군 ○○지구 골재적치장 원상복구공사	170
◆ 고성군 ○○등반로 주차장조성사업	171
◆ 고성군 ○○청사 신축공사(통신공사)	173
◆ 고성군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4
◆ 남해군 ○○태풍피해 복구사업	175
◆ 남해군 ○○섬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용역	176
◆ 하동군 ○○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	177
◆ 하동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78
◆ 하동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0
◆ 산청군 ○○기반공사	182
◆ 산청군 ○○진입도로확포장공사(2공구)	183
◆ 함양군 ○○지구 양돈단지 지장물 철거사업	184
◆ 함양군 ○○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85
◆ 거창군 ○○조경공사	186
◆ 거창군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187
◆ 합천군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188



창원시 ○○공원 조성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A=37,462m²
(화장실 지상1층 67m², 도로 및 진입광장 4,292m², 조경식재 등)
- 사업비 : 4,452,459천원
- 사업기간 : 2013. 7. 16 ~ 2014. 7. 15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452,459	3,588,255	864,204	19%

_주요 심사내용

- 산마루 측구 등 우수관(플룸관) 및 우수맨홀 현장 타설로 변경
- 일반콘크리트 우수맨홀을 내부식에 강한 GRP맨홀로 변경
-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우수관로 매설 계획 재검토
- 일부 경관상 필요한 부분(진입광장부)을 제외하고 산벽 옹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정
- 기 식재된 수목 유지 및 각종 시설물 재활용 방안 강구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등을 숙지하여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창원시 ○○정수장 활성탄 여과재 재생 및 교체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활성탄 신탄 413m³, 활성탄 재생 245m³
- 사업비 : 600,9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0,990	382,190	218,800	36.4%

_주요 심사내용

- 재생 활성탄 생산업체 조사에 의하여 최고 생산 재생율로 변경
 - 재생 활성탄(345.6m³) 재생율 : 71%(245.4m³) → 77%(266.1m³)
- 명확하지 않은 용도와 비효율적인 예비 활성탄 구입(비축)량 조정
 - 예비 활성탄(140m³)은 필요시 보충 사용하고자 하면 보관에 있어 변질과 시간 경과로 인하여 제품의 기능과 효율을 보장할 수 없음
- 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물량 조정
 - 신탄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413m³ → 273m³
 - 재생활성탄 투입 및 고르기 : 245.4m³ → 266.1m³

_기타 착안사항 등

- 활성탄의 사용빈도, 횟수에 따라 여과기능 효과성과 교체의 적절성
- 활성탄의 신탄구입과 재생탄 사용에 따른 효과성, 경제성을 고려 검토

진주시 ○○산업단지조성환경평가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930,000m²
- 사업비 : 247,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7,000	200,266	46,734	18.92%

_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측정조사비) 조정
 - 동식물상조사 : 4회(단가 : 5,000천원/회당) ⇒ 2회(단가 : 3,000천원/회당)
 - 조사대상 : 9종(1회 ~ 3회), 총16회 ⇒ 평균조사 횟수 1.78회 ⇨ 2회 적용
 - 대기질조사 : 20회(5지점 × 4회) ⇒ 12회(4지점 × 3회)
 - 수질조사 : 20회(5지점 × 4회) ⇒ 12회(4지점 × 3회)
 - 토양조사 : 20회(5지점 × 4회) ⇒ 4회(4지점 × 1회)
 - 소음, 진동조사 : 20회(5지점 × 4회) ⇒ 12회(4지점 × 3회)
- 인쇄비 조정
 - 보고서(10절, 백상30부, 200면)
 - 2,794,000원(200면 × 13,970원) ⇒ 1,610,000원[2000면 × 8,050원
(13,970-5,920)]
 - 표지(8절, 10P, 5매) : 88,350원 ⇒ 17,670원

_기타 착안사항 등

- 직접경비(측정조사비)는 현장조사 여건, 조사범위 설정, 주변환경 등을 고려

통영시 ○○마을 환경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면벽설치 L = 67.0m, 석축설치 L = 102m
- 사업비 : 256,06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6,060	181,070	74,990	29.29%

_주요 심사내용

- 조형물 받침대제작 품을 잡철물 제작설치(간단)으로 조정
- 보차도경계석 설치에 따른 기초거푸집(0.3m²) 제외
- 조경석 쌓기 품을 표준품셈에 따라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조경석 쌓기	조경공 1.212인 굴삭기 0.657hr	조경공 0.084인 석 공 0.251인 굴삭기 0.588hr

- 법면보호공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꼬치, 소운반) 제외
- 조달청, 가격정보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한 단가 조정(7종)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통영시 ○○펌프장 펌프보수 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펌프장 보수 1식
- 사 업 비 : 294,2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4,200	265,380	28,820	9.8 %

_주요 심사내용

- 공구손료 품 조정(품셈 1-12)
 - 공구손료 : 인건비의 3.0 → 1.0%
- 일위대기, 설치품 조정(품셈 1-1-1)

구 분	요 청	심 사
펌프설치 (670HP, 500KW)	플랜트 기계설치공	기계설비공
권양기 설치	플랜트 기계설치공 플랜트 용접공	기계설비공 용접공
Roller Gate 제작비	플랜트 기계설치공 플랜트 용접공	기계설비공 용접공

- 운반비(펌프 검수 및 시운전) 품 조정(협의)
 - 운반비 1,328,000원 감

■ 기계장비 단가조정

구 분	품 목	규 격	단 위	단가검토(원)			비 고
				요 청	심 사	감	
기계	현장철거 및 공장 분해점검	1650A×500KW	5대	25,750	20,000	5,000	견적
	솔던베어링	-	5대	70,000	55,425	14,575	"
	케이싱베어링	SCS13	5대	12,780	11,502	1,278	"
	슬리브	SCS13	5대	42,000	37,800	4,200	"
	스러스트베어링	29352	5대	19,985	17,546	2,439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계공사 표준품셈 의한 적정 인부임 적용
- 작업 공정상 일반기계공사 및 플랜트기계공사 적정여부를 검토
- 법령에 의한 각종 제비율 검토 조정

사천시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A=354,610m²),
도시 관리계획(체육시설) 시설결정(A=33,000m²)
- 사업비 : 1,314,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14,000	1,156,111	157,889	12.02

주요 심사내용

- 인쇄물 조판생략 감액, 토질조사 및 시험에 따른 인부임 및 자재대 조정, 용역에 따른 조감도 제작 삭제
- 용역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으로 부가세 적용
- 「실시설계」와 「국비지원사업 계획 및 설계」는 일상감사 의견으로 통합설계 시행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관례적인 답변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 용역비 과다산출 등 적절치 못한 분리설계를 경제적인 통합 설계로 개선 조정
- 추정공사비의 근거는 LH공사 조성원가를 기준하였다고 명시하였으나 LH공사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결과 조성비는 전체사업비의 일부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며, 조성비에는 상·하수관로 등의 시설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상·하수관로비용은 삭제 조정
- 에너지사용계획의 출장비는 산출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삭제 조정

기타 착안사항 등

- 과업내용과 부합하는 설계내역 적용 여부

사천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7,280m²)/○○종합운동장(8,970m²) 잔디관리
- 사업비 : 141,779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1,779	122,100	19,679	13.88

_주요 심사내용

- 천연잔디 외 5종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등을 반영 조정
- 일상감사의견으로 1인이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통합관리토록 의견제시 하였으나 반영치 않은 점을 확인, 1인이 종합운동장 2곳을 통합관리토록 적용하고 이중 계상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삭감
- 단가산출서 중 잔디깎기 외 6종의 기계사용 작업단가의 근거 없는 인부적용을 시간당 기계작업량에 따른 보조인부를 계상토록 적용 조정
- 단가산출 중 배토, 통기의 스틸매트는 다목적 작업차에 장착하여 작업하는 것인데 스틸매트+파종기를 적용하고 있어 "스틸매트+다목적 작업차 장착으로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사천시 ○○공원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거(관목류 4,177주, 교목류 30주), 수목이식 25주 식재
(상록교목 37주, 낙엽교목 84주, 상록관목 875주,
낙엽관목 11,468주, 지피류 7,480주), 흙 콘크리트포장 800㎡
- 사업비 : 296,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6,000	257,712	38,288	12.94

_주요 심사내용

- 초화류 9종은 조달청 3자단가, 조경석 및 철평석은 생산자 현장도착도 견적가 (별도 운반비 삭제) 조사 등 설계단가와 비교 경제적인 가격을 적용
- 판석포장
 - 판석포장의 수량산출은 1㎡당 철평석 0.7㎡이고 잔디(평떼)수량은 0.3㎡로 산출하였으나 일위대가내용이 상이하여 조정 시 면적비를 개선적용 잔디식재 면적을 늘려 잔디활착이 용이토록 하고, 잔디밀도 향상으로 토사유실 방지 및 자연경관이 향상토록 판석포장과 잔디식재 면적을 1㎡당 6:4의 비율로 조정
 - 일상감사 의견인 잔디식재율 75%를 적용 1㎡당 0.4㎡내 잔디 실제식재 면적은 $0.4 * 75% = 0.3㎡$ 를 적용
- 콘크리트 깨기 : 별도의 상차비를 적용 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깨기 시 모으기 작업은 상차작업과 중복 계상으로 삭제

■ 포장절단

- 콘크리트커터 시간당 작업량은 표준품셈에 의하여 1일 작업거리 350m/ 8시간을 적용토록 조정

■ 되메우기 및 다짐

- 경계석부설 및 파형강관부설 접합 시 다짐장비로 램머는 적합한 다짐장비가 아니므로 램머 ⇒ 플레이트 콤팩트로 조정

■ 관목류제거

- 표준품셈의 벌목단가를 준용하여 1㎡당 1주를 적용하고 근거없이 산정한 1주당 벌목부 소요량 조정(집재거리는 100m 포함)
- 근거 없는 부산물처리(용차) 산정은 수목 1주당 중량 10kg을 적용산정 하고 1톤 트럭을 사용하여 부산물을 0.5시간에 1톤을 운반처리 하는 것으로 개선 조정

■ 잔디붙임 : 미 반영된 일상감사 의견을 적용 평떼를 줄때로 적용

■ 판석포장(철평석)

- 판석포장품은 건축품셈의 석재판 붙임을 준용하고 있지만 현장 작업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어 토목분야 보도용블록포장의 대형블록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일당 시공량은 표준시공량에서 40%를 감하여 적용

■ 이윤은 조경공사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범위내로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김해시 ○○ 삼각지구 저지대침수방지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U형개거(4.0×2.0) L = 221m, U형측구(0.5×0.5) L = 207m
전석불임 : A=996.0m²
- 사업비 : 989,67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4. 1.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89,670	670,880	318,790	32.21%

주요 심사내용

- 호안보호공법 변경

구분	규격	단위	요청	심사	증(Δ)감	비고
U형개거	4.0×2.0	m	221.4	-	Δ) 221.4	
전석불임	1:1이하	m ²	-	451.0	451.0	
전석쌓기	1:1이상	m ²	996.0	854.0	Δ) 142.0	

- 배수로 및 유수지 바닥 치환공(잡석, 40mm) 3,979m³ 삭제

기타 착안사항 등

- 주변환경, 경제성, 시공성,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유수지와 배수로 규격 최대한 유지
- 사면보호공은 소류력 재검토로 필요한 구간만 구조물 설치

밀양시 방법용 CCTV 제조구매설치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생활동영상 CCTV 21대, 차량번호 인식 CCTV 8대
- 사업비 : 360,173천원
- 사업기간 : 2013. 6. 28. ~ 2013. 8. 27.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60,173	329,604	30,569	8.5%

_주요 심사내용

- PAN/TILT 설치 인부 품 조정(통신설비공 : 0.67인 → 0.55인)
- 영상분석처리 및 로컬종합시험 인부단가 조정 (S/W시험사 : 214,819원 → 211,502원, H/W시험사 : 211,502원 → 191,839원)
- 누전차단기 인부 조정(내선전공 → 통신내선공)
- 레미콘 타설 인부 품 조정(보통인부 0.42인 → 0.30인)
- 보도블럭 복구 인부 품 조정(보통인부 0.016인 → 0.006인)
- 루프검지헤드, 루프검지리드인 설치 할증 제외(주어진 현장 여건에 맞춰 변화가 할증 25% 제외)

_기타 착안사항 등

- 자재 단가 조정
 - 기존 2개소의 자재 단가 견적서 외 추가로 1개소의 견적을 받아 최저 단가 적용

밀양시 ○○도로 확·포장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 = 954m, B = 6.0m
- 사 업 비 : 353,763천원
- 사업기간 : 2013. 6. ~ 2014. 12.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53,763	331,143	22,620	6.4%

_주요 심사내용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사무실) 규격 조정
 - 규격 9m × 6m × 2.6m → 6m × 6m × 2.6m
- 보조 기층재 구입·운반 품 조정
 - 구입·운반 → 현장도착도 구입으로 조정
- 가드레일 적용구간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지침」에 의거 가드레일 적용구간 조정
 - 표준레일 66경간에서 22경간, 단부레일 6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

거제시 ○○공원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행 데크 설치 L = 998m, B = 1.8m
- 사업비 : 671,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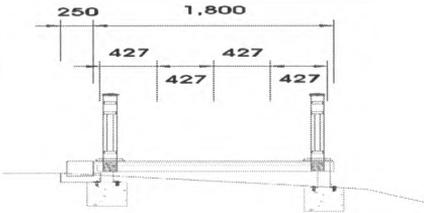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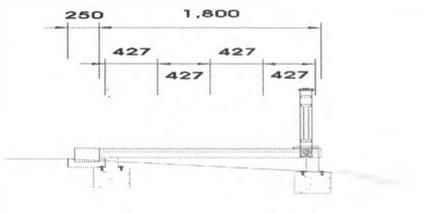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71,000	565,000	106,000	15.8%

주요 심사내용

- 현재 상용되고 있는 데크 두께 30mm, 24mm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수행하고 시공의 경제성, 시설의 안정성, 향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부재 선정으로 원가 절감

구분	요청	심사
바닥재	멀바우 t=30mm	멀바우 t=24mm
하중조건	사하중 : 0.029kN/m, 활하중 : 0.6kN/m	사하중 : 0.023kN/m, 활하중 : 0.6kN/m
휨응력검토	f=0.682MPa < fa=10.50MPa ... OK	f=1.057MPa < fa=10.50MPa ... OK
전단력검토	f=0.068MPa < fa=0.75MPa ... OK	f=0.085MPa < fa=0.75MPa ... OK
수량	2,281㎡ (단가 100,900원/㎡)	2,281㎡ (단가 83,000원/㎡)

-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의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의 난간부 일부 삭감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도 면		
수 량	824경간, 853m ²	682경간, 706m ²

_기타 착안사항 등

- 구조해석 등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적정 부재를 재선정하고, 사업 현장 확인으로 과다·불필요한 시설 설치를 조정하여 원가 절감

거제시 ○○휴양림 체육시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다목적 풋살 경기장 조성 1식
- 사업비 : 196,95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6,956	143,806	53,150	26.99%

주요 심사내용

-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석축 쌓기공의 전석 구입분에 대하여 현장 기존 석축, 자연 석으로 자재 유용
- 울타리 메쉬웬스 설치에 대하여 운동시설에 적합한 그물망 웬스로 변경

구 분	요 청	심 사
사 진		
수 량	메쉬웬스 49경간(H=4m, B=2m)	그물망 24.5경간(H=4m, B=4m)

- 어린이 조합놀이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기존 철제그네 철거에 대하여 노후도 및 현장 인근 여유 부지를 확인하여 철제그네를 존치하고 조합놀이시설 설치로 변경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확인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와 유용 자재 검토 및 현장 여건 반영으로 공사원가 절감

양산시 ○○정수장 송수관로 설치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상수공사(주철관 ϕ 400, L= 5,598m)
포장공사(아스팔트 포장-10,578.8㎡, 보도포장-33.6㎡)
- 사업비 : 3,144,11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44,110	3,084,710	59,400	1.9%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 작업효율(E값)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터파기 (백호우0.7㎡) (산근 1호표)	○ 974원 E값 : 0.70 - 0.05	○ 905원 E값 : 0.75 - 0.05

-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효율(E값)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우0.7㎡) (산근 2호표)	○ 3,469원 E값 : 0.65	○ 3,234원 E값 : 0.80

-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효율(E값)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사토처리 (토사) (산근 3호표)	○ 5,034원 (적재장소진입시간4=0.42분)	○ 4,996원 (적재장소진입시간4=0.15분)

■ 포장절단 인력 및 작업능력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포장절단 (아스팔트) (산근 6호표)	○ 2,399원 (특별인부1인, 보통인부 2인, 작업량 : 350m/일당)	○ 2,177원 (특별인부0인, 보통인부 3인, 작업량 : 400m/일당)

■ 모래부설 및 다짐 작업효율(E값)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모래부설 및 다짐 (백호우0.7m³) (산근 8호표)	○ 3,749원 E값 : 0.75	○ 3,630원 E값 : 0.90
모래부설 및 다짐 (백호우0.2m³) (산근 39호표)	○ 5,126원 E값 : 0.75	○ 4,194원 E값 : 0.90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능력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산근 41호표)	○ 4,734원 (불연속구간, 시공량 : 2,000m²/일당)	○ 1,892원 (연속구간, 시공량 : 5,000m²/일당)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품셈 적용

양산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굴조사 5,266㎡, 발굴조사 809㎡
- 사업비 : 165,19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5,190	143,551	21,639	13.1%

_주요 심사내용

- 조사단 인건비 조정
 -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사단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계약 단가 적용
- 보정계수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조사단장	- 토질 : 어려움(1.2)	- 토질 : 양호(0.9)	
책임조사원	- 유구내용 : 어려움(1.3,1.2)	- 유구내용 : 쉬움(1.0,1.0)	
작업인부	- 토질 : 어려움(1.5,1.5) - 유구내용 : 어려움(1.1)	- 토질 : 양호(0.7,0.7) - 유구내용 : 쉬움(0.8)	

■ 수량 조정

-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사단 수량은 시굴 조사를 포함하여 산정조치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조사단 수량산정	발굴조사 수량	시굴조사 수량 + 발굴조사 수량	

기타 착안사항 등

- 정밀 발굴조사 추가에 따른 조사단 인건비 및 수량 조정

의령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설폐자재 569ton, 혼합건설폐기물 82ton
- 사업비 : 94,05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4,050	77,165	16,885	17.9%

_주요 심사내용

- 건설폐자재, 혼합건설폐기물 단위중량 조정

구분	요청	심사	비고
건축폐자재	주거용 단독주택 (1.409ton/m ²)	공공용 철골조 (0.055ton/m ²)	
혼합폐기물	주거용 단독주택 (0.203ton/m ²)	공공용 철골조 (0.118ton/m ²)	

_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물대장을 통한 실제 건축물 용도 및 재료 등을 확인하여 면밀히 검토

의령군 ○○천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호안정비 L = 1.14km
- 사업비 : 788,78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88,780	750,280	38,500	4.9%

_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교통안전시설조정	교통처리시설 (1~4공구)	교통처리시설 (2,4공구)	1,3공구 제외
법면정리품 조정	잡목제거 (5미터미만)	조경 예초 적용	'13년 예초 신설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지 확인을 통한 현장여건과 상이한 단가조정 등 면밀히 검토

창녕군 ○○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A=1,182m²
- 사업비 : 292,663천원
- 사업기간 : 2013. 4. 4. ~ 2013. 9. 30.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2,663	254,374	38,289	13.0%

_주요 심사내용

- 법면보호공(떼붙임) m²당 보통인부 0.045인 ⇒ 보통인부 0.0196인, 조경공 0.0084인 조정
- 법면보호공(면고르기) m²당 보통인부 0.18인 ⇒ 보통인부 0.008인, 조경공 0.001인 조정
- 순성토 운반장비 덤프 15ton ⇒ 덤프 24ton 조정
- 발주자 가설사무실 A=40m², 도급자 가설사무실 A = 50m², 창고 A = 40m², 숙소 A = 60m² ⇒ 컨테이너 사무실 1동, 컨테이너 창고 1동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에 비해 가설사무실을 과다 설계하는 등 시공비 증가 요인이 발생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창녕군 ○○지구 골재적치장 원상복구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콘크리트포장 A=3,074㎡, 플룸관매설 L=798m, U형측구 L=1,811m
- 사업비 : 630,120천원
- 사업기간 : 2013. 6. 17. ~ 2013. 12. 17.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30,120	588,630	41,490	6.6%

_주요 심사내용

- 플룸관(600C) 설치시 기초콘크리트 불필요하여 삭제
- 절토, 터파기시 ㎡당 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조정
- 되메우기시 ㎡당 다짐기계 램머(80kg) ⇒ 콤팩트(1.5ton) 조정
- 컨테이너하우스(사무실용, 3*6*2.6) 동당 2,900,000원 ⇒ 1,980,000원
- 패널(600*1200) 매당 25,500원 ⇒ 22,327원
- 합판(내수1급) ㎡당 8,801원 ⇒ 7,711원

_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단가, 가격정보,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에 의한 자재단가 정확히 파악 반영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고성군 ○○ 등반로 주차장조성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 수 공 : L형측구 237m, L형옹벽형측구 197m
 - 구조물공 : 역T형옹벽 33m, 전석쌓기 A = 79.5m²
 -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A = 1,485.7m², 아스콘덧씌우기 A = 2,180m²
 - 부 대 공 : 가드레일(옹벽용) 60경간, 낙석방지책 67경간
- 사 업 비 : 492,7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92,730	490,200	2,530	0.5%

_주요 심사내용

1. 자재단가 조정

- 아스콘(표층) 하절기 열화에 의한 소성변형이 적고 마찰력 증대로 차량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등 시공 및 경제적으로 유리한 #67로 수정
- 레미콘 자재비 진주권⇒거제통영권 수정

자재명	규격	단위	자재가격(원)			비고
			요 청	심 사	증감	
아 스 콘	#78⇒#67	m ²	79,280	77,460	△ 1,820	
레 미 콘	40-16-08	m ³	58,930	60,380	1,450	
레 미 콘	25-21-08	m ³	62,310	67,450	5,140	
레 미 콘	25-24-12	m ³	69,840	73,420	3,580	

2. 단가산출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사 유
사토(토사) (산근 5호표)	f=0.90/1.275 (4,698원/m³)	f=0.90/1.25 (4,681원/m³)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사토(발파암) (산근 6호표)	V=20km/hr (11,150원/m³)	V=35km/hr (10,044원/m³)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철근가공조립(간단) (산근 19호표)	기구손료 : 가공 및 조립 노무비의 2%(425,720원/ton)	기구손료 : 가공노무비 2%(420,598원/ton)	"

3. 공사기간 조정

-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 공기를 반영 공기조정(6개월→5개월)

4.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2013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13.4.1.) 적용

구 분	요 청	심 사
간접 노무비	10.6%	10.5%

5. 설계도면 수정

- NO.1+0, NO.2+0 지점 횡단면도(1) 상에 암파쇄방호시설 작성 누락

기타 착안사항 등

- 발파암 사토량(2,743m³) 관내 건설공사 현장 성토 및 잡석용 수요량 파악 처리

고성군 ○○청사 신축공사(통신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신설비공사 1식, 방송설비공사 1식, CCTV설비공사 1식
- 사 업 비 : 254,25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4,253	247,778	6,475	4.7%

_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2013년 통신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구 분	요 청	심 사	절감액
기타경비	6.4%	5.4%	725천원

2. 자재단가 조정

- 시중거래가격 조사 수정

자재명	규격	단위	자재가격(천원)			비고
			요 청	심 사	증 감	
대중방송용장비	LCD프로젝트 (6000ANSI)	대	6,670	4,400	Δ 2,270	
대중방송용장비	LCD프로젝트 (6000ANSI)	대	4,485	2,915	Δ 1,570	
CCTV설비	PoE허브 (10/100/1000Mbps)	대	5,000	3,300	Δ 1,700	

고성군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_용역개요

- 용역규모 : 조사측량 L=0.70km,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용역비 : 149,16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9,160	143,000	6,160	4.1%

_주요 심사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정

구분	요청	심사	사유
작은 금액 요율(Y1)	2.91	3.27	추정사업비 적용 착오
큰 금액 요율(Y2)	2.90	3.15	"

-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요율 조정(추정사업비 2,737백만원)
- 상기 설계용역 대상 지구는 기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되는 바 실시설계비율 조정(100→80%)

_기타 착안사항 등

- 해당내용 없음

남해군 ○○ 태풍피해 복구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창고 개축공사 1식(건축), 사면보호공사 1식,
하천석축보수공사 1식, 진입로보수공사 1식 등(토목)
- 사업비 : 282,420천원(도금액 255,302, 관금액 27,118)
- 사업기간 :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82,420	250,240	32,180	11.39%

주요 심사내용

- 건축공사(창고개축공사)의 마당포장공사
 - 레미콘 11,01m³(648,268원) 삭제(관급자재에 반영되어 중복 계산됨)
 - 와이어메쉬갈기 노무비(41,958원)삭제(콘크리트 타설품에 포함된 품임)
 - 폐기물처리공사의 폐콘크리트처리비 16,561원/ton을 12,075원/ton,
페아스팔트처리비 18,082원/ton을 12,785원/ton으로 조정
- 토목공사의 일위대가 제 2호표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인력 품조정
 - 조경공 0.11인을 0.088인으로 보통인부 0.07인을 0.056인으로 조정
- 산근 1호표 구조물터파기 Cm=20sec(135°)를 Cm=18sec(90°)로 조정
- 산근 2호표 되메우기 Cm=20sec(135°)를 Cm=18sec(90°)로 조정, 보조인부 삭제
- 산근 11, 12호표 포장 깨기의 일사공량 Q=4.6m³/hr을 Q=5.9m³/hr로 조정보조인부 삭제
- 산근 17호표 유로폼의 박리제 단가 1,500원/ℓ 를 600원/ℓ 으로 조정
- 산근 33, 34호표 잡석 및 자갈운반거리 조정(산청 신등면을 남해 고현면)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실정에 맞는 수량산출 검토 및 건설품셈 적용

남해군 ○○섬 조성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용역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형현황측량,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행정),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산림조사서, 지형도면고시
- 용역비 : 500,000천원(도금액 500,000)
- 사업기간 :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00,000	208,000	292,000	58.4%

주요 심사내용

-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심사 의뢰한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주요과업이 생태도시과에서 시행중인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과업이 중복
- 위 두건의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검토로 중복부분은 삭감하고 신규 공종은 추가 반영하여 기 발주 용역에 포함시켜 용역비 절감 및 용역기간(공고 및 심사 등)을 단축함.
- 계약심사 결과 중복 및 신규공종

(단위 : 원)

공종	심사전	심사후	증감액	비고
지구단위계획	341,504,900	101,735,976	-239,768,924	변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일반사업)	19,378,700	19,057,972	-320,728	추가
토지적성평가	29,587,800	2,684,712	-26,903,088	변경
지형도면고시	3,688,300	4,022,692	334,392	변경
지구경관계획	30,368,800	24,745,426	-5,623,374	추가
지형현황측량	36,735,600	33,396,000	-3,339,600	추가
산림조사서	2,839,100	2,581,000	-258,100	추가
재경비	35,896,800	19,776,222	-16,120,578	
계	500,000,000	208,000,000	-292,000,000	

기타 착안사항 등

- 도시계획 담당부서 일괄시행으로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하동군 ○○시장 중앙통로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화강석 석재판 보도블럭 포장 1,688㎡, 경계석 56m
- 사 업 비 : 314,3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4,300	210,330	103,970	33.08%

_주요 심사내용

- "석재판(화강석, 30*30*3cm) 붙임"단가산출 조정 : 67,706원/㎡ → 32,763원/㎡

공 종	단 위	단가산출 내용		비 고
		요 청	심 사	
화강석 붙 임 (습 식)	㎡	1. 배치인원 - 석 공 : 0.4인/㎡ - 보통인부 : 0.2인/㎡	1. 배치인원 - 석 공 : 0.12인/㎡ - 미 장 공 : 0.08인/㎡ - 보통인부 : 0.01인/㎡ 2. 공구손로 - 인력품의 3% 3. 지세별 할증률 - 상가 : 25%	경상남도 회계과-51123 (2012.12.26)호에 근거하여"석재판 보도포장"심사기준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하동군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석쌓기 100㎡, 탄성포장 75㎡, 목교 3개소, 로프웬스 716경간
- 사업비 : 396,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6,000	288,050	107,950	27.26%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2.48%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대/1.1) * 2.48%
- 공사비 조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직노*2.3%) 삭감
 - 추정금액 3억원 미만
- 단가산출 조정

공종	단위	단가산출 내용		비고
		요청	심사	
흙깎기 (토사, 백호우 0.7㎡)	㎡	◦ 1,131원/㎡	◦ 969원/㎡	작업효율, 체적환산계수, cm 등 조정
로프설치(Ø20)	경간	◦ PP로프 : 6m/경간	◦ PP로프 : 8m/경간	설계도면 근거

■ 자재규격 및 단가 조정

- 와이어메쉬(#8-150*150) : 2,100원/m² ⇒ 1,664원/m² (조달청 가격정보)
- 탄성포장재
 - 규격 : T=75mm ⇒ T=20mm (적용착오)
 - 단가 : 149,603원/m² ⇒ 58,950원/m² (현장설치도, 조달청 가격정보)
- PP로프(∅20) : 3,500원/m² ⇒ 1,500원/m² (견적가격 적용 착오)

■ 로프난간 설치(H=1.2m)비 조정 : 223,432원/개소 ⇒ 145,991원/개소

- 난간기둥재(그레이트우드각재) 재료비 이중계상으로 삭제 : 64,000원/EA

■ 수량산출 조정

공 종	단위	수량산출 내용		비 고
		요청	심사	
보조기둥 (∅40mm)	m ³	○ 5m(두께)*75m ² (면적)=375m ³	○ 0.12m(두께)*75m ² (면적)=9m ³	설계도면 근 거
콘크리트 (25-21-08)	m ³	○ 0.12m(두께)*75m ² (면적)=9m ³	○ 0.1m(두께)*75m ² (면적)=7.5m ³	설계도면 근 거

기타 착안사항 등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제경비 적정 반영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원가 재확인
-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과다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 물량 반영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하동군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B = 8m, L = 156.2m)
- 사업비 : 447,02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47,020	404,780	42,240	9.45%

주요 심사내용

- 설계내역 오류 조정
 - 흙작기(리핑암) 물량 : 742m³ → 884m³ (증) 142m³
 - 벌개제근 물량 : 1,889m² → 1,809m² (감) 80m²
 - 와이어메쉬(#6-150*150) 자재대 누락 : (증) 121m²
- 보조기층 운반비(22,552천원) 삭제
 - 견적가격에 따르면 보조기층 단가(20,000원/m³)는 운반비 포함가격이므로 별도의 운반비는 불필요함.
- 드레인보드 자재대 조정 : 5,000원/m² → 4,000원/m² (조사가격)
- 사토 적재(굴삭기 0.7m³)에 따른 버킷계수(K) 조정 : 0.9(점토) → 1.1(보통토)
- 폐기물 상차비(1,251천원) 삭제
 -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아스콘포장 깨기 등 들어내기(백호우 0.7m³) 적용에 대하여 깨기작업과 동시에 폐기물 차량 적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폐기물 상차비는 삭제함.

■ 단가산출 조정

공 종	단위	단가산출 내용		비 고
		요 청	심 사	
전 석 헐 기 (전석쌓기 의 50%)	m ²	1. 인력 - 석 공 : 0.11인/m ² - 보통인부 : 0.11인/m ² 2. 기계(백호우 0.7m ³) - 0.43hr/m ²	1. 인력 - 석 공 : 0.14인/m ² 2. 기계(백호우 0.6m ³) - 0.43hr/m ²	표준품셈 개정
문 양 거푸집	m ²	1. 재료비 - 합성수지(P.E)무늬거푸집 적용 2. 노무비 - 문양스티로폼 폼 적용	1. 재료비 - <u>문양스티로폼 거푸집 폼 적용</u> 2. 노무비 - 문양스티로폼 폼 적용	유로폼에 부수적으로 붙여 시공하는 문양스티로폼 부착으로 조정
L용벽설치	m ²	1. 합판거푸집(3회) 적용	1. <u>유로폼 적용</u>	설계도면 근 거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원가 재확인
-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과다 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 물량 반영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산청군 ○○기반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반조성 A = 90,950m²
- 사업비 : 2,261,65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0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261,650	2,182,960	78,690	3.5%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맨홀두경 등 2종)
 -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해 과다하게 적용된 품목에 대한 단가 조정
- 본 공사는 토공량이 100,000m³이상으로 대규모공사 현장에 해당되어 적정규모의 장비로 조정
 - 절토, 터파기, 되메우기 : 굴삭기 0.7m³ → 굴삭기 1.0m³
 - 흙깎기, 흙쌓기 : 불도저 19ton → 불도저 32ton
 - 유옹덤프운반 : 덤프 10.5ton → 덤프 15ton
- 박스 및 U형 측구 거푸집 조정
 - 합판거푸집(4회) → 유로폼
- 보차도경계석 기초거푸집 삭제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게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강구
- 건설표준 품셈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산청군 ○○진입도로확포장공사(2공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 802m, B = 6.5m
- 사업비 : 969,717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0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69,717	931,221	38,496	4.0%

_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각재 등 25종)
 -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해 과다하게 적용된 품목에 대한 단가 조정
- 전석구입 운반 적재장비 규격 조정
 - 굴삭기 0.7m³ → 로더 2.87
-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운반 장비 규격 조정
 - 덤프 15ton → 덤프 24ton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고시 단가로 조정
 - 현장시험 경비 138,200원 → 128,600원
- 종배수관(파형강관 D300~D500mm) 수량을 집수정 공제 후 재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게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강구
- 건설표준 품셈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함양군 ○○지구 양돈단지 지장물 철거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축물(지장물) 철거 4,761㎡
- 사업비 : 240,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26 ~ 2013. 10. 22.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0,000	174,900	65,100	27.13

주요 심사내용

- 장비 굴삭기 규격 : 0.7㎡ ⇒ 1.0㎡로 적용
- Q=3.3㎡/hr ⇒ Q=3.3㎡+5.9㎡/2=4.6㎡/hr로 적용
- 콘크리트 포장깨기 두께 : 20cm ⇒ 10cm로 조정
- 콘크리트 단위수량 : 2.4톤/㎡ ⇒ 2.3톤/㎡로 조정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물(지장물) 철거 장비인 굴삭기 규격을 현장조건에 맞게 조정
- 현장 확인시 폐콘크리트 두께가 약10cm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

함양군 ○○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로정비 L = 238m(0.7×0.7m), 전석쌓기 A = 549m²
- 사업비 : 388,59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10 ~ 2013. 10. 6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8,590	343,350	45,240	11.6

_주요 심사내용

- 굴삭기 터파기, 되메우기 보조인부 제외 적용
- 사토 운반속도(V) : 10km/hr, 15km/hr ⇒ 30km/hr, 35km/hr 적용
- 무근콘크리트 깨기, 포장깨기 보조인부 제외 적용
- 잡석 운반장비 : 덤프 15톤 ⇒ 덤프 24톤으로 조정

_기타 착안사항 등

- 터파기 및 되메우기시 실제 시공시 소요되지 않는 보조인부 제외
- 콘크리트 깨기시 소요되지 않는 보조인부 제외 적용
- 덤프트럭 운반속도(V)를 현실에 맞게 적용

거창군 ○○ 조경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거리 조성 L = 767m, B = 10m
 - 조경수 식재 조형소나무 외 25종
 - 파고라 등 시설물 8종
- 사업비 : 1,059,048천원(도급 822,048천원, 관급 237,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6. 26 ~ 2014. 6. 25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67,000	1,187,259	79,741	6.3%

_주요 심사내용

- 수목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절감액

(단위 : 천원)

구분	홍가시나무	광나무	꽃땃강나무	송악
당초 반영	H2.5/45주	H1.0/1,220주	H0.6/4,900주	8CM/3,520본
처리방향	수목삭제	수목삭제	수목삭제	수목삭제
처리사유	난대성 수종	난대성 수종	난대성 수종	난대성 수종

- 조경 수종이 기후에 맞는 수종인지를 최초로 분류하고
- 위키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을 활용하여 서부경남 내륙지역의 기후에 적합하지 않는 난대성 수종을 제척함

_기타 착안사항 등

- 기후 및 토양 등에 따른 식물 고사율 등을 착안한 계약심사

거창군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 외 5개소(378,703m²) 조성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 ~ 12.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0,000	559,790	40,210	6.7%

_주요 심사내용

- 측량의 제경비 산출시 보통 인부는 엔지니어가 아니므로 제경비 요율 제외
- 공원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보조원 현실에 맞게 변경
 - 중급숙련기술자(141,106원) ⇨ 초급숙련기술자(107,668원)
 - 인쇄비 일부 조정
 - 전자조판 및 편집, 경인쇄비 180page ⇨ 100page

_기타 착안사항 등

- 공원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중 직접인건비 항목에서 초급기술자 보다 보조원 인건비가 과다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 초급기술자 : 134,313원
 - 보 조 원 : 141,106원

합천군 ○○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_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구조물공 : 식생토낭쌓기(H=0.4 ~ 11.8m, L=116m) A=1,432m²
전석쌓기(H=1.7 ~ 3.0m) L=114m
- 배수공 : U형개거(0.4x0.4) 122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40cm) A=400m²

■ 사업비 : 469,6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_심사결과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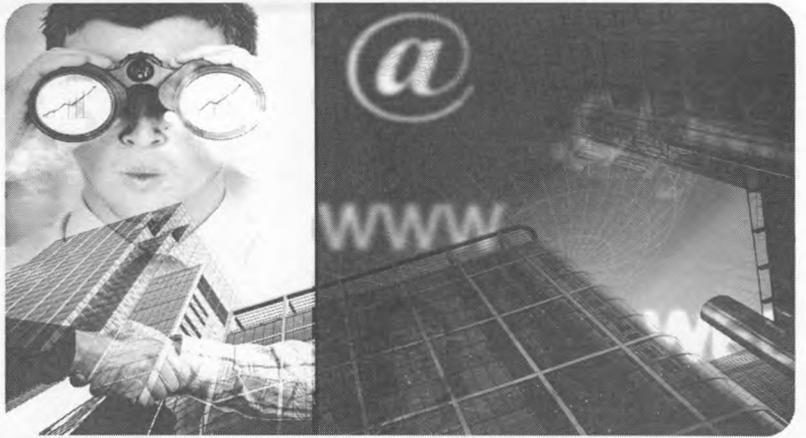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69,600	437,300	32,300	6.88%

_주요 심사내용

- 경사지 정비를 위한 구조물 시공시 유수에 의한 토사 유출이 없는 현장으로 단가에서 부직포 시공 제외
- 현장 사용 자재에 대해 시장조사로 최적가 적용

_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IV

부 록

-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91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209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249
-

[경상남도 규칙 제3007호]
(2012. 10. 1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 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0.11>

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0.11>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0.11>

2. 삭제 <2012.10.11>

가. 삭제 <2012.10.11>

나. 삭제 <2012.10.11>

다. 삭제 <2012.10.11>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신설 2012.10.11>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1>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2.10.11>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공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0.1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0.1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0.1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11>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가관

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삭제 <2012.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11.>
-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조치)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1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2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3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3-4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p>○ 공사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 4. 품셈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5. 그 밖에 참고자료(시행품의서, 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발신명의	
------	--

[별지 제3-1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p>○ 물품구매 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p>1. 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설명서(사양서)</p> <p>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p>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p>○ 물품제조(수리) 개요 :</p> <p>○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p>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서, 설명서(사양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료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과장 성명 (인)

발신명의	
-------------	--

[별지 제3-4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발신명의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 물 심사요청서에는 반 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 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	--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3.)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

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 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을 위하여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천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 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공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총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총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

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과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입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

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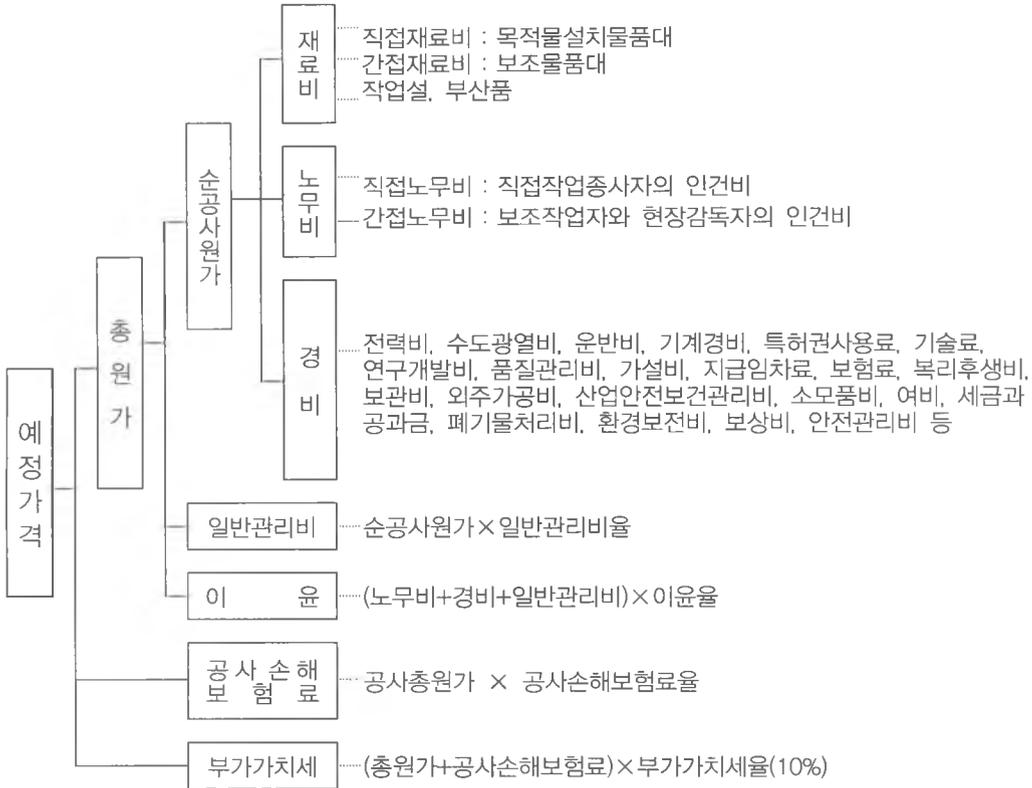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
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
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총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
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
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
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
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참고사 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 와 제3관 “5-가”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5.5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text{공사 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

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 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총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text{직접공사비} = \text{수량} \times \text{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

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의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의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계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제4절 원가심사
- 제5절 설계변경 심사
-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

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 의 “1)·4)” 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 의 “4)”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

- 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 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 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 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 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 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 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 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 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 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 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 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 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